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비교연구

2018. 12



세법연구 18-09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비교연구

2018.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다 운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민 경 전문연구원

김 준 현 공인회계사

정 경 화 전문연구원

목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10
1.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10
가.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10
나. 통계 담당 조직	13
2. 국세통계 공개 현황	13
가. 연간공개	14
나. 조기공개	21
다. 월간공개	21
3. 국세통계 활용 현황	22
III.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26
1. 미국	26
가.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26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30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40
2. 영국	43
가. 국세통계 공개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43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49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53

3. 일본	60
가. 국세통계 공개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60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62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73
4. 호주	74
가. 국세통계 공개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74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75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78
5. 남아공	80
가. 국세통계 담당 조직	80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81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8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86
1.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제공 비교	86
가. 국세통계 규정	86
나. 국세통계 조직	88
다. 국세통계 작성방법 및 공개항목	90
라. 국세통계 연구 활용	98
2. 우리나라 국세통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99
가. 국세통계 생산 조직 및 과정	99
나. 국세통계 데이터 활용 측면	101
다. 신규 생성 가능한 국세통계 항목	103
라. 행정기관별 자료 활용 확대	104
참고문헌	106

표 목차

〈표 II-1〉 국세통계 제공 관련 규정 개정연혁	12
〈표 II-2〉 2018년에 새로 공개된 주요 국세통계 항목	20
〈표 II-3〉 국세통계를 활용한 국내 연구보고서	24
〈표 III-1〉 미국 국세청이 발간하는 주요 국세통계 간행물	32
〈표 III-2〉 미국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개인소득세의 주요 통계 항목	34
〈표 III-3〉 미국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 발간물	40
〈표 III-4〉 영국 국세청(HMRC)의 주요 국세통계 발표 항목	51
〈표 III-5〉 영국 국세청(HMRC) Datalab에서 승인한 주요 연구주제 예시	57
〈표 III-6〉 일본 국세청 통계 제공 현황	63
〈표 III-7〉 민간급여 실태조사 표본조사 개요(2017년)	65
〈표 III-8〉 민간급여 실태조사 제공 항목	68
〈표 III-9〉 기업 표본조사 개요(2016년)	69
〈표 III-10〉 기업 표본조사 제공 항목	70
〈표 III-11〉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 표본비율(2016년)	71
〈표 III-12〉 신고 표본조사 제공 항목	73
〈표 III-13〉 SA-TIED에서 공지한 연구주제	85
〈표 IV-1〉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87
〈표 IV-2〉 국세통계 제공 대상자	88

〈표 IV-3〉 통계기구의 유형	89
〈표 IV-4〉 국세통계 생산 조직 비교	90
〈표 IV-5〉 국세통계 작성방법	91
〈표 IV-6〉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항목 특징	96

그림 목차

[그림 II-1] 우리나라의 분야별 국세통계 공개항목 수(2018년 기준)	15
[그림 III-1] 미국 국세청 조직도(2018년 10월 기준)	29
[그림 III-2] 미 국세청 소득통계국(SOI)의 조직도(2018년 3월 기준)	29

I. 서론

-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 공개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세통계 공개항목은 2014년 348개, 2015년 396개, 2016년 418개, 2017년 440개, 2018년 49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¹⁾
 -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하는 통계항목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자료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통계항목을 선정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국세청은 2017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할 것을 발표함²⁾
 -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의 공개를 확대할 것을 발표함

- 현재 우리나라는 세목별·분야별로 다양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13 ‘비밀유지’에 따라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는 비공개하고 있어 전체 납세자의 신고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집계한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음

- 국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해왔으며, 2007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을 도입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1)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2)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7. 8. 17.

- 세법 제·개정, 세입예산안 심사와 같은 조세 관련 의정활동 시에만 과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때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되어야 함
- 국세통계는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집계통계만으로는 조세정책 평가, 소득분배 효과 분석 등 정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이에 국세청에서는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개청 이래 최초로 국세통계 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였음
- 국세통계센터란 통계수요자가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원하는 통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안시설로서, 기존에 공개된 형식의 통계 외에 이용자가 필요한 형식의 통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세통계센터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인력과 시설을 보완하여 민간 연구기관이나 학계로도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³⁾
- 본 연구는 국세청의 국세통계 공개확대 기조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생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주요국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함

3)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 「국세통계센터」 출범,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 생산 본격 지원 -』, 2018. 6. 25.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리나라의 국세통계센터와 같이 외부연구자에게 국세통계 미시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고자 조사대상국에 포함함
 - 각 국가별로 국세통계 공개·제공 배경 또는 법적근거, 국세통계 담당 조직을 조사함
 - 각 국가별로 국세통계 공개항목, 공개방법 및 주기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각 국가별로 국세통계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제공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이하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제공 관련 규정 및 공개항목, 활용 현황을 검토함
 - 제Ⅲ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세통계 공개·제공 관련 규정, 국세통계 공개항목, 국세통계 활용 현황을 검토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

II.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1.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가.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국세통계’)를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 대중에게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항목을 결정함⁴⁾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임명한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8명,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으로 구성됨⁵⁾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은 2007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세법개정 초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법 제정·개정 목적인 경우에만 국세통계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세법개정을 통해 제공 사유 및 제공대상자를 확대함⁶⁾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2항

5)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85의 5-0-2

6) 기획재정부, 『2007 간추린 개정세법』, 2008. 6. pp. 24~25.

- 2010년 1월 1일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 제·개정 이외에 세입예산안 심사 및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통계를 제공하도록 제공 사유를 확대함
 -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세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 분석을 위해 국세통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통계를 제공하도록 함
 - 2014년 1월 1일부터는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목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세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개정함⁷⁾
 - 2018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⁸⁾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통계 제공대상자를 확대함⁹⁾
-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국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의정활동 목적이나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하며, 현재 국세통계 제공이 허용되는 기관 및 사용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법 제정·개정, 세입예산안 심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세법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 분석을 위해 국세통계가 필요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가 필요한 경우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세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통계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7)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14』, 2014, p. 9.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총 23개 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음

9)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17』, 2017, p. 9.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세통계의 명칭, 사용목적, 국세통계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 국세통계를 요청함

□ 다만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가 원칙임

- 즉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가 포함되거나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음

〈표 II-1〉 국세통계 제공 관련 규정 개정연혁

세법 개정일	제공대상	관련 규정	제공 사유	시행일
2007. 12. 31. 신설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국기법」 제85조의6 제4항	세법 제정, 개정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2010. 1. 1.
2010. 1. 1. 개정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국기법」 제85조의6 제4항,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안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국세 부과, 징수, 감면 등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 시 납세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 	2010. 1. 1.
	국회예산 정책처	「국기법」 제85조의6 제4항	국회 위원회의 세법 제정, 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 분석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2014. 1. 1. 신설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국기법」 제85조의6 제6항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2014. 1. 1.
2017. 12. 19. 개정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기법」 제85조의6 제6항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2018. 1. 1.

자료: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나. 통계 담당 조직

-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인 ‘국세통계 담당관’이 있으며, 통계 수요조사를 통해 국세통계 발간항목을 결정하고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 역할을 수행함¹⁰⁾
 - 또한 국세통계센터 운영,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 총괄·조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국세통계 담당관의 직원은 14명으로 전체 국세청 인력 약 19,000명(2015년 기준) 중 0.07%에 해당함¹¹⁾
-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담당관과 각 담당부서에서 작성양식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각 담당부서에서 데이터 가공, 오류검증 등을 통해 통계표를 생산하며, 국세통계 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공개를 결정하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되어 발간되는 것으로 파악됨

2. 국세통계 공개 현황

-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는 연간공개, 조기공개, 월간공개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간공개]** 매년 12월 말 작년 기준의 국세통계를 집계한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것이며, 국세통계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통계를 공개함
 - 책자로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일부 국세통계만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홈페이지(<http://stats.nts.go.kr>)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통계 코너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10) 국세청, https://www.nts.go.kr/about/about_01_05.asp(검색일자: 2019. 2. 14)

11) 국세통계 담당관 직원 수는 국세청 홈페이지상 조직도를, 국세청 전체 인력 수는 OECD, *Tax Administration 2017: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Annex A Data tables, Table A.53, 2017. 9를 참고함

- [조기공개] 『국세통계연보』 발간까지 약 1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시성 제고 목적으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생산가능한 국세통계는 매년 7월, 11월경 공개함
 - 주로 총세수 현황, 세목별 신고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조기 공개함
- [월간공개]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매일 국세통계 홈페이지에서 공개함
 - 월말 기준으로 2개월 전 현황을 공개함

가. 연간공개¹²⁾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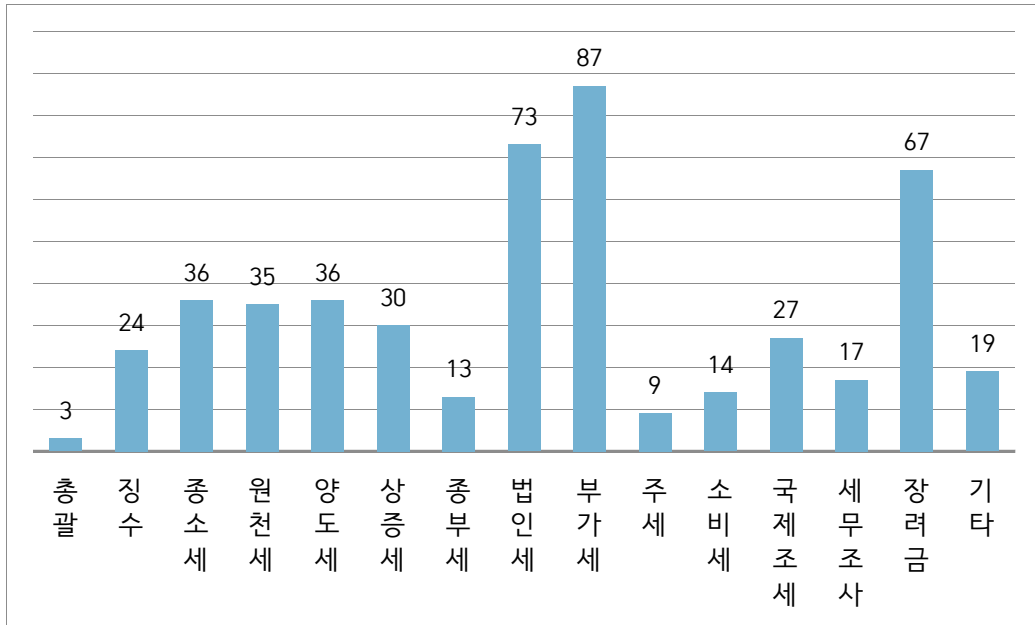
- 국세통계 공개 항목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는 크게 15개의 분야로 나누어 총 490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하였음
 - 15개 분야는 국세 총괄, 징수, 세목별 통계(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소비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기타로 나누어짐
 - 최근의 국세통계 총공개항목은 2014년 348개, 2015년 396개, 2016년 418개, 2017년 440개¹³⁾ 및 2018년 490개임
- 세목별 통계가 총 333개로 국세통계 공개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가장 많은 통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 참조)
 - 2018년 기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개하는 통계항목 수는 87개, 법인세는 73개, 근로·자녀장려금은 67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종합소득세의 경우 36개, 양도소득세는 36개, 원천세 35개, 상속·증여세는 30개, 국제조세 27개, 국세징수 24개, 소비세 및 주세 23개, 세무조사 17개, 종합부동산세 13개, 국세 총괄 3개의 통계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2018.

13)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T권고안』, 2018. 1.

[그림 II-1] 우리나라의 분야별 국세통계 공개항목 수(2018년 기준)

(단위: 개수)



자료: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2018.

-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공개하는 통계항목이 많은 것은 사업자 현황을 나타내는 사업자 현황 통계가 부가가치세 분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의 경우 신고서식의 종류가 많아 통계항목 또한 많이 제공됨
 -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현황 통계 관련해서는 총 29개의 통계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각 세목별 통계의 대상기간은 상이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기타 통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됨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함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인 신고분을 대상으로 통계를 집계함¹⁴⁾

2) 국세통계 연간 공개항목

- 각 항목별로 제공하는 국세통계의 주요 항목 및 특징은 아래와 같음
- [1. 총괄] 총세수액, 국세청 소속 직원 1명당 세수액 및 징세비, 지역별 납세인원 현황을 제공하고 있음
- [2. 징수] 연도별·지역별·세무서별 총세수를 세목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징수 관련 총 26개의 통계항목 중 체납액 관련 통계가 13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체납액 관련 통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재산추적조사, 출국금지 현황, 은닉재산 신고 실적 등 주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자의 납부세액 산출까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상세히 구분하여 종합소득규모·과세표준규모·지역별·성별·연령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종합소득금액 분위별 통계도 제공하고 있음
 - 종합소득금액 분위별 통계는 10단계로 나누어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외에 종합소득신고자 중 금융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신고자의 통계와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원가명세서의 상세 항목별 금액도 2009년부터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음
 - 2009년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주요 계정과목의 총금액만 제시하였으나 2009년부터 이를 확대하여 업태별, 매출액 규모별로도 제공함

14) 이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한 법인의 신고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것임

- 또한 개인사업자의 원가명세서는 2015년 이전까지는 모든 사업자를 통합하여 제공하였으나, 2015년부터 제조, 공사, 분양, 기타로 나누어 원가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음

- [4. 원천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신고자의 납부세액 산출까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을 소득금액 규모·지역별·성별·연령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근로소득금액 분위별 통계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2018년부터 기부금공제액을 기부금 유형별(정치기부, 법정기부, 지정기부 등)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5. 양도소득세] 신고유형별(예정신고, 확정신고, 결정·경정)로 나누어 양도세액 산출까지 양도차익, 각종 공제금액 등의 상세항목을 납세지, 소득규모,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
 - 이외에 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상세통계와 미등기자산양도, 1세대 3주택 등의 사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 현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계를 공개함

- [6.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액 산출까지의 상속·증여재산가액 및 각종 공제금액을 납세지별, 상속·증여재산가액 및 과세표준 규모, 자산종류별, 성별, 과세표준 규모, 연령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 상속·증여세 산출까지의 상세 현황은 납세자 신고자료와 과세관청 결정자료로 구분하여 제공함
 - 자산종류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누어 제시함
 - 2018년부터는 상속·증여세액 결정 현황을 자산종류 및 연령별로 제시한 자료도 제공함

- **[7.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산유형(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까지 산출 현황을 납세자유형(개인/법인), 납세지별, 과세표준 규모별로 나누어 제시함
 - 또한 자산유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을 10분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8. 법인세]** 법인세와 관련하여 공개하는 통계 총 73개 항목 중 신고자료에 대한 상세 통계는 41개로 법인세액 산출까지의 당기순손익,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각종공제금액 등 세부항목을 법인종류, 법인규모,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등에 따라 상세히 구분하여 제시함
 - 이외에 법인의 재무제표 신고 현황에 대한 통계 10개, 법인 수에 대한 통계 10개, 공익법인에 대한 통계 6개, 법인세 결정·경정 현황에 대한 통계 5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음

- (계속) 201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법인세 신고 관련 통계 공개항목을 확대하였고, 2018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통계 공개항목을 확대함
 -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을 세부업종별, 수입금액 규모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한 통계와 법인세분위별 신고 현황 통계도 공개함
 - 2018년부터 공익법인 수입금액을 상세히 구분한 통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현황,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법인 수의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함

- (계속)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 세액공제항목 신설에 따른 통계항목이 추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음
 - 예로, 2018년부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함

- **[9.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개하는 통계 총 87개 항목 중 신고

와 관련한 통계항목은 총 32개로 총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하여 지역별, 업태별, 과세표준 규모별 등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함

- 이외에 사업자 현황에 대한 통계 29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결정·경정에 관한 통계 14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통계 9개를 공개하고 있음
- 2018년부터는 사업자 관련 통계를 확대하여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을 지역, 업종, 연령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 [10. 주세] 주세 신고, 주류출고, 주류면허로 나누어 지역별, 주류별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11. 소비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신고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12. 국제조세]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주로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신고 상세 현황,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 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상세 신고 현황은 기업규모, 과세표준, 세부담규모에 따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주요 업태별로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법인세 신고 현황 통계를 공개함
 - 기업규모는 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기준에 따라 세부담규모는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기준에 따라 법인세 신고 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 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주소지별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 소득 통계를 공개함
- 이외에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13. 세무조사] 사업자유형별(개인/법인), 세목별(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실적을 수입금액 규모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차명 계좌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관련 통계를 공개함
- 이외에 조세포탈범 조사실적, 탈세제보자료 처리실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등 탈세 관련 처리 실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정보를 이용한 조사실적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14.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현황과 지급 현황을 소득종류별(근로, 사업소득), 가구유형별(단독, 홑벌이, 맞벌이), 근무유형별(상용, 일용, 사업자), 재산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 통계를 공개함
- 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된 근로·자녀 장려금 통계는 장려금 지급액 및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어 공개됨
- [15. 기타] 납세자 권리와 관련한 통계 및 전자세목 신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함

〈표 II-2〉 2018년에 새로 공개된 주요 국세통계 항목

세목	내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분위별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원천세	근로소득금액 분위별 통계 공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액 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통계 공개
상속, 증여세	상속, 증여세 결정 현황을 자산종류 및 연령으로 구분한 통계 공개
법인세	공익법인에 대한 통계항목 확대 -공익법인 수입금액 상세구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현황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수
부가가치세	사업자 현황 통계항목 확대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을 지역, 업종, 연령별로 제시
국제조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소득 통계 공개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현황을 시, 군, 구 단위로 세분화한 통계 공개

자료: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2017; 『2018 국세통계연보』, 2018.

나. 조기공개¹⁵⁾

- 연간 국세통계가 공개되기까지 약 1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의 적시성 제고 목적으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생산가능한 국세통계는 통상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제공함
 - 통상적으로 1차 조기통계는 매년 7월에, 2차 조기공개는 11월에 시행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1차 조기공개 국세통계항목은 총 79개 항목으로 주로 총세수 현황과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신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함
 - 분야별로 징수 및 세수 관련 통계가 13개, 상속·증여 8개, 법인세 16개, 부가가치세 33개, 소비세 7개, 기타 2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공개함

- 2018년 기준 2차 조기공개 국세통계항목은 1차 조기공개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81개 항목이 공개되었으며, 1차 때 공개되지 않은 국제조세, 전자세원, 세무조사, 불복 관련한 국세통계를 2차 때 조기공개함
 - 법인세의 경우 소득분위별 신고 현황,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지역별 신고법인 수 등의 자료가 2차 조기공개 때 새로이 공개됨
 -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동사업자, 신규사업자 등 사업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새로이 공개됨

다. 월간공개

- 국세청은 매월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월말 기준으로 2개월 전 현황을 공개함

15) 국세청 국세통계 사이트, http://stats.nts.go.kr/notice/notice_view.asp?page=1&idx=2146#(검색일자: 2019. 1. 24)

- 사업자등록 현황 중 '14개 업태 사업자 현황'은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하여 전국 시, 군, 구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100대 생활밀접업종'은 전국 시, 군, 구별로 공개하고 있음

3. 국세통계 활용 현황

- 국세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규정에 따라 국회의 의정활동 및 국회예산정책처·정부출연연구기관·학계 등의 연구수행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학계에서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최근 연구는 <표 II-3>과 같으며 국세청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연구분야 또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근로장려금, 주세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주로 법인 및 개인의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자료, 개인의 소득공제 및 법인의 조세감면 현황 등 개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세수추계 목적으로도 국세통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국세통계는 전체신고서를 대상으로 합산한 거시적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어 특정 제도가 각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분석 등 정책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 이러한 한계점은 2018년 6월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개소로 미시자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수행 목적의 국세통계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2018년 6월 25일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고, 공급자 위주의 통계 생산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체계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음¹⁶⁾
- 이전에는 납세자 과세정보는 과세목적 이외 활용에는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조세 정책 수립 및 평가 등 공익목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기인함

- 국세통계센터란 통계 수요자가 국세통계 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직접 분석하여 원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안시설로 영국의 Data Lab과 유사한 시설임
 -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통계 이외에 통계가 필요한 자는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수요에 맞는 자료를 얻어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국세통계센터는 총 9개 분야의 미시자료를 제공하며, 연구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등이 비식별화된 미시자료를 연구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미시자료를 제공함

- 제공된 미시자료는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물인 통계표는 개인정보 식별 여부, 연구목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반출을 허용함

-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을 이용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세통계 미시자료를 활용한 연구보고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¹⁷⁾

16)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 「국세통계센터」 출범,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 생산 본격 지원 -』, 2018. 6. 25.

17) 국세통계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연구보고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음

〈표 II-3〉 국세통계를 활용한 국내 연구보고서

분류	연구보고서	국세통계 활용 자료	발간월
국회 예산 정책처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이 첨단 기술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개발특구의 세액감면 신고실적 및 관련 조세지출금액	2018. 12.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법인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자료(과세소득, 결정세액), 이월결손금	2018. 12.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및 수급가구 수 - 개인소득자의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자료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과세소득금액, 결정세액)	2018. 12.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NABO 추계 & 세제 이슈)	과세표준 규모에 따른 과세인원분포 및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대상 추정을 위한 자료	2018. 11.
	2019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인원, 신고금액 (예: 1인당 평균 기부금액 추정을 위한 신고자료,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원 및 금액, 소득구간별 공제대상 기부금액 및 신고인원)	2018. 11.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조세지출금액 추계를 위한 『국세통계연보』 활용	2018. 11.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 활용	2018. 8.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 방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지역별 과세건수 및 금액	2018. 8.
	2018 미리보는 법안 비용 추계	월세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출산입양 공제자 인원, 소득세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과세소득, 결정세액 등	2018. 3.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	적용세율별 주식양도차익, 주식거래세수, 주식양도차익 규모별 건수 및 금액	2017. 12.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근로소득자 수 및 세수, 총급여액 기준 근로자 수 및 결정세액,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연금세액공제 건수	2018. 9.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받은 기업 수 및 금액, 외국인투자법인 산출세액 등	2018. 9.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신고 인원, 금액	2018. 9.

분류	연구보고서	국세통계 활용 자료	발간월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현황	2018. 9.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IX)]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5천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 등 파악을 위한 납세자료	2018. 9.
	세법연구 18-01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연구 - 맥주를 중심으로 -	주종별 주류 출고 현황,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현황, 주세 및 소비세 현황	2018. 6.
	세법연구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	2018. 6.
	연구보고서 17-01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별 분포	2017. 12.
학술지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세액공제 신고 현황	2018.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등이 결제수단 배분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신용카드 공제금액, 총소득공제 금액	2018. 12.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속·증여세수 비중, 상속·증여세의 신고 세액공제 현황	2018. 6.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가업상속 공제 건수, 공제금액	2017. 1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법인세 세액감면, 공제항목별 건수	2017. 6.
	OECD BEPS Action 4의 개관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국내 법인의 이자비용, 순이자비용	2017. 3.
	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	주종별 주류 출고 현황	2018. 4.

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
 3. 세무학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Ⅲ.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1. 미국

가.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1) 국세통계 공개·제공규정

- 미국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108조에서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¹⁸⁾
 - 위의 규정에 따라 1916년부터 미 국세청 내 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I)에서 국세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을 담당함¹⁹⁾
 - 소득통계국은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외에 과세신고서를 기반으로 한 연구수행업무도 담당함²⁰⁾
- 「미국 내국세법」 제6108조 ‘통계발간 및 연구’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자 유형별 소득금액, 비과세금액,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 등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항목에 대해 매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함²¹⁾

18) 「미국 내국세법(IRC)」, §6108

19) 미국 국세청 매뉴얼(Internal Revenue Manual), Section 1.13.1.1.1

20) 상동

21) 「미국 내국세법(IRC)」, §6108(a)

- 국세청장은 외부 관계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및 연구분석에 활용한 미시자료 사본(transcripts)을 정보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²²⁾
 - 단 미 국세청 내 소득통계국에서 요청 자료에 활용된 통계표(tabulations)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권한을 가짐²³⁾
-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시 직·간접적으로 특정납세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는 연구에 활용되거나 공개 또는 발간될 수 없음²⁴⁾

2) 통계 담당 조직²⁵⁾

- 미국은 국세청 ‘연구, 분석, 통계(Research, Analytics and Applied Statistics; RAAS)’ 본부하의 ‘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I)’에서 국세통계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그림 III-1, 2] 참조)
 - ‘연구·분석·통계본부(RAAS)’는 국세청의 운영지원(Operation Support) 부서 소속으로 분석을 위한 경제적 모델 설정, 각종 예측 및 납세순응 연구, 입법안 평가 등 다양한 연구 분석활동을 수행하며, 소득통계국(SOI)을 포함하여 5개의 부서로 구성됨
- 2017년 11월 기준 연구, 분석, 통계본부(RAAS)에는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억 3백만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음²⁶⁾
 - 연구, 분석, 통계본부 소속 직원은 주로 경제학자, 통계학자, 연구자, 정보기술자, 프로그램분석가로 구성됨

22) 「미국 내국세법(IRC)」, §6108(b)

23) 「미국 국세청 실무지침」,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13-001(검색일자: 2019. 2. 12)

24) 「미국 내국세법(IRC)」, §6108(c)

25) 「미국 국세청 실무지침」,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검색일자: 2019.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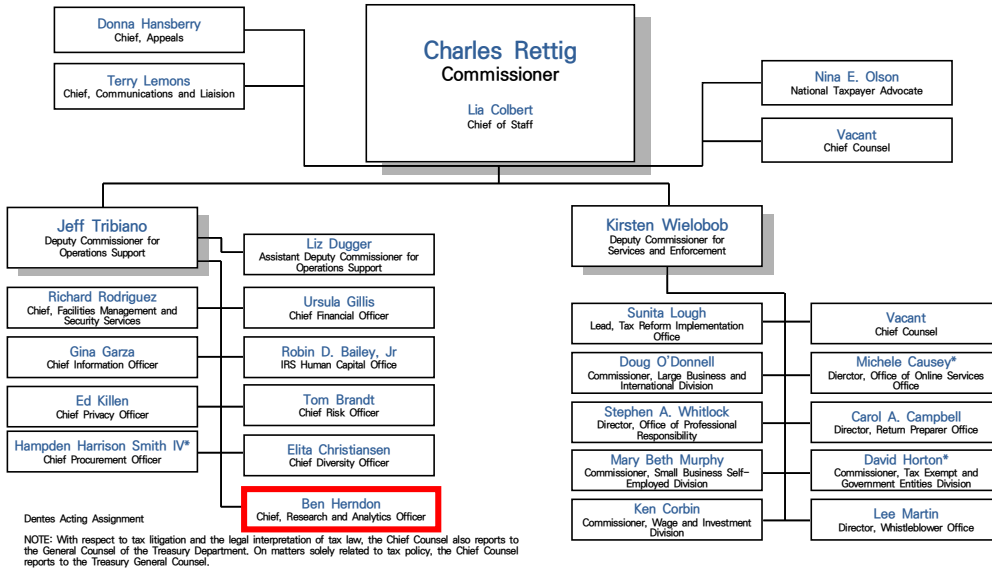
26) 미국 재무부, The 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Practices Need Improvement, Highlight 및 Background 챗터, 2018. 5.

- 이는 미국 국세청 전체 직원 약 10만명(2015년 기준)²⁷⁾ 중 0.35%에 해당함
- 소득통계국(SOI)은 연방세수 정보의 수집, 분석, 보관 및 이를 국세청, 연방정부, 대중, 비영리기관, 정책입안자 등 세수통계가 필요한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4개의 부서로 세분화됨²⁸⁾
 - i) 법인·파트너십·국제기업: 법인의 다양한 소득신고서(Form 1120)를 바탕으로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법인의 소득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 생성 및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역할을 수행함
 - ii) 개인·비영리단체: 개인소득세, 비영리단체, 비과세채권, 상속 및 증여 관련 신고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자료 생성 및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역할을 수행함
 - iii) 정보관리 부서: 소득통계국의 다양한 연구에 대한 정보기술지원, 통계간행물 출판, 대중의 통계데이터 요청 및 발간된 통계간행물에 대한 질의응답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iv) 통계적 지원: 미국 국세청 내 여러 조직에 통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로, 소득통계국(SOI)의 연구를 위한 표본설계, 연구에 대한 가중치 결정, 미국 국세청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측정, 설문조사,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27) OECD, *Tax Administration 2017: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Annex A Data tables, Table A.53, 201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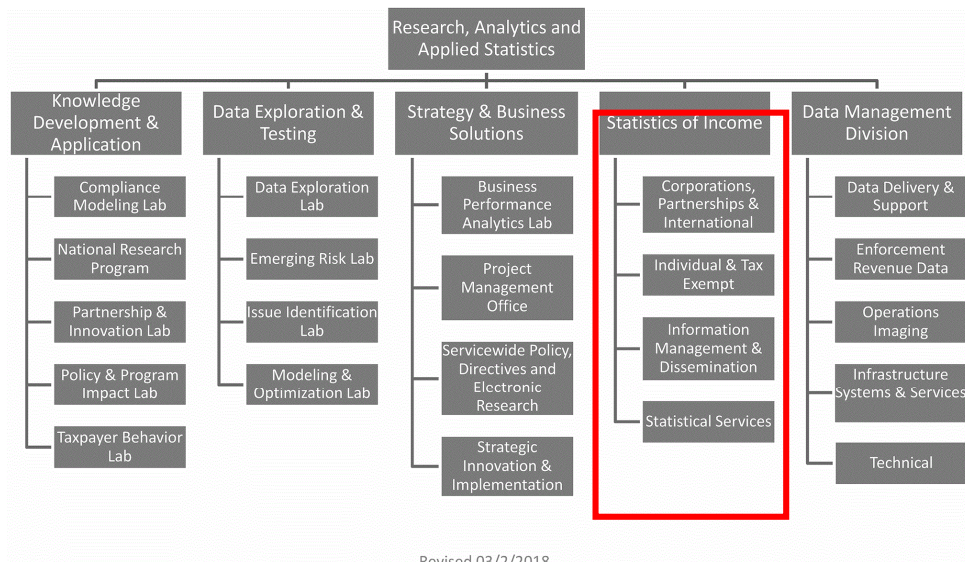
28) 「미국 국세청 실무지침(IRM)」, 1.1.18.1.4.

[그림 III-1] 미국 국세청 조직도(2018년 10월 기준)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nternet/irs_organization_chart.pdf(검색일자: 2019. 2. 15)

[그림 III-2] 미 국세청 소득통계국(SOI)의 조직도(2018년 3월 기준)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검색일자: 2019. 2. 15)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1) 개요

-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계발간물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발간하는 주요 통계발간물은 다음과 같음
 - 국세총괄통계(IRS Data book)
 - 『법인세 통계연보(Corporation Complete Report)』
 - 『개인소득세 통계연보(Individual Complete Report; Publication 1304)』
 - 소득통계국 공지(SOI Bulletin)
 - 미국 국세청 연구자료(IRS Research Conference & Bulletins)가 있음
- **[국세총괄통계(IRS Data book)]** 세입 현황, 세무조사실적, 신고유형, 세액납부 관련 담보 및 가산세 현황, 납세자 지원 현황 등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소득통계국 공지(SOI Bulletin)]** 소득통계국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다양한 세금신고서를 통해 얻은 초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정책 및 행정가 등이 관심을 가질 주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²⁹⁾
 - 예로, 2018년 1분기에는 ‘Individual Income Tax Shares, 2015’라는 주제로 2015년의 소득분위별 소득비중 및 세부담 비중을 분석하였고, 2018년 4분기에 는 ‘High-Income Tax Returns for Tax Year 2015’라는 주제로 2015년 연간 조정된 총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신고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됨
- **[세목별 통계연보(Complete Report)]**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누어 각각의 통계연보를 작성하며, 각 통계연보에 있는 국세통계 데이터는 전체 신고서 중에서 표본

2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soi-bulletins>(검색일자: 2019. 2. 12)

을 선정하여 추정한 데이터임³⁰⁾

- 표본은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기법을 활용해 일정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나누는 후 각각의 모집단 그룹에서 무작위로 수집함
 - 법인의 경우 총자산과 총소득 규모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함
 -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 조정된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이지만 납부 세액이 없는지 여부, 사업소득이 5천만달러 이상인지 여부, 외국소득신고·사업 소득신고·농업소득 신고 등 Form 1040외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의 특징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함³¹⁾

□ 『개인소득세 통계연보(Publication 1304)』는 매년 8~10월경에 발간되었으며, 통계자료 발간까지 2년의 시차가 존재함

- 2015년 과세연도 신고자료에 대한 통계는 2017년 9월에, 2016년 과세연도 신고자료는 2018년 9월에 발간됨

□ 『법인세 통계연보(Publication 1053)』는 매년 4월에 발간되었으며, 통계자료 발간까지 3년의 시차가 존재함

- 2013년 과세연도 신고자료에 대한 통계는 2016년 4월에 발간되었으며, 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 법인의 신고자료에 대한 통계는 발간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임³²⁾

□ **[미국 국세청 연구자료]** 미 국세청과 Tax Policy Center는 매년 6월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납세순응, 납세비용 측정, 조세복잡성, 납세행정 강화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함

30) 미국 국세청,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2016(Publication 1304), 2017. p. 5, p. 205; 미국 국세청,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2013 (Publication 1053), 2016, p. 9.

31) 미국 국세청,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2016 (Publication 1304), 2017, p. 5, p. 205.

32) 미국 국세청, IRS Statistics of Income 2018 Program Details, <https://www.irs.gov/pub/irs-soi/2018soiprogramdetails.pdf>(검색일자: 2019. 2. 12)

- 연구는 미 국세청 소속 연구원, 국세청 및 주정부 조세행정 담당자, 다른 국가의 세무전문가, 학계·연방기관·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표 III-1〉 미국 국세청이 발간하는 주요 국세통계 간행물

구분	내용	발간 주기
IRS Data Books	세입 현황, 세무조사실적, 신고유형, 세액납부 관련 담보 및 가산세 현황, 납세자 지원 현황 등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3월경 • 2017년 IRS Data book은 2016. 10. 1~2017. 9. 30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됨, 2018년 3월 발간
SOI Bulletins	소득통계국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다양한 세금신고서를 통해 얻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정책 및 행정가 등이 관심을 가질 주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분기별
Projections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수를 예측	매년 업데이트
Complete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별도로 발간 • 전체신고서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추정한 데이터로 통계연보를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 개인소득세 통계연보: 매년 8~9월경 - 법인소득세 통계연보: 매년 4월경
IRS Research Conference & Bullet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세청과 Tax Policy Center는 매년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국세청 및 Tax Policy Center 소속 연구자 외 다른 국가, 민간, 학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 공개 	매년 6월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products-publications-and-papers> (검색일자: 2019. 2. 12)

2) 국세통계 공개항목

- 미국은 크게 개인, 법인, 상속·증여(Estate and Gift), 비영리단체(Charitable)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음³³⁾

33) 미국 국세청 국세통계 홈페이지, <https://www.irs.gov/statistics>(검색일자: 2019. 2. 13)

- 본 챗터에서는 세목별 통계연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 **[개인소득세]** 개인의 소득세신고서 'Form 1040'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까지의 소득금액, 각종공제금액 및 납부세액을 소득규모, 신고유형, 적용세율,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음(〈표 Ⅲ-2〉 참조)
 - 소득규모는 통계종류별로 17~24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음
 - 신고유형은 개인단독신고, 홑벌이신고, 맞벌이개별신고, 맞벌이합산신고 및 과부 (surviving spouse)신고자로 구분함
 -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0, 10, 15, 20, 25, 28, 33, 35, 39.6%로 구분함
 - 소득분위는 조정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의 총납부세액, 평균적용세율, 소득비중 및 납부세액 비중을 공개함
 - 단 소득분위별 신고자료는 2013년 이후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과 일반소득세율로 나누고, 실효세율을 구하여 실효세율 구간별로도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을 공개하고 있음
 - 한계세율 및 일반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 자본이득세율로도 구분함
 - 실효세율은 납세자의 과세대상소득 대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비중을 11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신고 수, 조정된 총소득, 총결정세액을 공개하고 있음
 - 실효세율은 5% 이하, 5~7%, 7~10%, 10~12%, 12~15%, 15~17%, 17~25%, 25~30%, 30~50%, 50~100%, 100% 이상 구간으로 구분함

- 또한 개인소득의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의 미국 내 소득,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거주자의 해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현황, 해외 파트너에게 지급한 소득에 관한 통계자료도 공개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미국 내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유형별, 소득유형별, 국가별로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표 III -2〉 미국 국제청에서 공개하는 개인소득세의 주요 통계 항목

구분		구분기준	통계내용	제공연도	출처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Filed and Sources of Income(개인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종류)					
1	All Returns: Selected Income and Tax Items	AGI규모별	총소득금액, 총결정세액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1.1
2	All Returns: Adjusted Gross Income, Exemptions, Deductions, and Tax Items	AGI규모별, 신고유형별	총조정된 소득금액(AGI), 비과세금액, 총공제금액, 항목별 공제액, 총결정세액, 세액공제액, 납부세액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1.2
3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Deductions, Credits, and Tax Items	AGI규모별, 신고유형별	소득종류별 금액, 소득조정금액 항목별 금액, 총공제금액, 결정세액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1.3
4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Deductions and Exemptions, and Tax Items	AGI규모별	소득종류별 금액, 소득조정금액 항목별 금액, 비과세금액, 총공제금액, 결정세액	1993~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1.4
5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Deductions and Exemptions, and Tax Items	AGI규모별	소득종류별 금액, 소득조정금액 항목별 금액, 비과세금액, 총공제금액, 결정세액	1995~201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Table 1
6	Returns with Income or Loss from Sales of Capital Assets Reported on Form1040, Schedule D	AGI규모별	자본이득, 손실금액	2012~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1.4A
7	All Returns: Number of Returns	AGI규모별, 신고유형별, 연령별	신고서 수	2008~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1.6
8	All Dependent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Deductions, Credits, and Tax Items	AGI규모별	부양가족 신고서의 소득종류별 금액, 비과세 금액, 총공제금액, 결정세액	2012~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1.7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Exemptions and Itemized Deductions(개인소득세 신고의 비과세 및 항목별 공제액)					
9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Itemized Deductio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Itemized Deductions by Type, Exemptions, and Tax Items	신고유형	항목별 공제액 유형별 세부통계 공개	1993~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2.1

	구분	구분기준	통계내용	제공연도	출처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Itemized Deductio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Itemized Deductions by Type, Exemptions, and Tax Items	신고유형	항목별 공제액 유형별 세부통계 공개	1995~200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Table 3
1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Itemized Deductio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Deductions, Credits, and Tax Items	신고유형	소득유형별 금액, 소득조정금액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공제 종류별 금액, 세액공제 종류별 금액, 총납부세액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2.2
11	All Returns: Exemptions by Type and Number of Exemptions	AGI규모별	신고서 세부양기축 여부, 부양가족 공제한 신고서 수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2.3
12	All Returns: Exemptions by Type and Number of Exemptions	신고유형	신고서 세부양기축 여부, 부양가족 공제한 신고서 수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2.4
13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Earned Income Credit	AGI규모별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자녀 수(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에 따라 구분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2.5
14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Earned Income Credit	AGI규모별	상동	1995~200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Table 4
15	All Returns: Affordable Care Act Items	AGI규모별	「Affordable Care Act」 법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	2014~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2.7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Tax Computation(소득계산 유형별 소득신고 내역)					
17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 Items	AGI규모별, 소득계산 유형별	소득계산 유형(Form 8615, Schedule D)별 총소득금액, 결정세액, 총세액공제액, 최종 납부세액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3.1
18	Returns with Form 8615 Tax Computation: Tax Items	AGI규모별, 소득계산 유형별	Form 8615 신고자의 신고서 수, 결정세액	2008~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3.1A
19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Total Income Tax as a Percentage of Adjusted Gross Income	AGI규모별	조정된 총소득(AGI) 대비 소득세액 비중별 신고서 수, 총조정소득, 결정세액 *5% 이하: 5~7%, 7~10%, 10~12%, 12~15%, 15~17%, 17~25%, 25~30%, 30~50%, 50~100%, 100% 이상으로 구분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3.2
20	All Returns: Tax Liability, Tax Credits, and Tax Payments	AGI규모별	세액공제 항목별 신고서 수, 금액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3.3

구분	구분기준	통계내용	제공연도	출처
21	All Returns: Tax Liability, Tax Credits, and Tax Payments	상동 AGI규모별	1995~201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Table 2
22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Tax Classified by Marginal Tax Rate	신고유형, 적용세율 한계세율(0, 10, 15, 20, 25, 28, 33, 35, 39.6% 별, 누진세율체계에 따름)별 납부세의 산출까지의 소득금액, 납부세액, 최저한세액, 순투자세액(net investment tax)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3.4
23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Tax Classified by Marginal Tax Rate	신고유형, 적용세율 상동	1995~201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Table 1
24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Tax Generated	AGI규모별, 적용세율 세율(0, 10, 15, 20, 25, 28, 33, 35, 39.6% 별, 누진세율체계에 따름)별 신고서 수, 산출세의 (income taxed at rate, Tax generated at rate)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3.5
25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Tax Generated	AGI규모별, 적용세율 상동	1995~200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Tax Shares, Table 2
26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 and Tax, Classified by Marginal Tax Rate and by Filing Status	신고유형, 적용세율 세율(0, 10, 15, 20, 25, 28, 33, 35, 39.6% 별, 누진세율체계에 따름)로 신고서 수, 산출세의 (income taxed at rate, Tax generated at rate)	1996~2016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6, Table 3.6
27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 and Tax, Classified by Marginal Tax Rate and by Filing Status	신고유형 상동	1995~201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Tax Shares, Table 3
28	Returns with Modified Taxable Income: Tax Classified by Type of Tax Computation and by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AGI규모별, 소득계산유형별 소득계산 유형(Form 8615, Schedule D)별 신고서 수, 조정된 총소득금액, 수정된 소득, 산출세의, 결정세의, 총세액공제액, 최종 납부세액	1995~2011	SOI Bulletin article -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Tax Shares, Table 4
Other Tables(기타 자료)				
29	Individual Income and Tax Data	AGI규모별 주정부별로 소득규모에 따른 신고서 수(신고 유형 구분), 조정된 총소득금액(소득유형 구분), 소득조정금액, 항목별 공제액, 세액공제, 납부세의 세부적으로 구분	1997~2016	SOI Bulletin Historical Table 2 (U.S. total)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Excluding Dependents(부양가족 제외한 개인소득세의 소득분위별 신고자료)				

구분	구분기준	통계내용	제공연도	출처
30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Floor on Percent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소득분위, 시계열	상위 50%까지의 신고서 수, 소득분위별 소득 기준금액, 조정된 총소득, 결정세액, 평균세율, 소득비중, 소득세예비중(부양가족 제외), *소득분위 0.001, 0.01, 0.1, 1, 2, 3, 4, 5, 10, 20, 25, 30, 40, 50%로 구분	SOI Bulletin article—Individual Income Tax Shares, Table 1
31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GI and Total Income Tax, and Average Tax Rates	소득분위, 시계열	하위 50%의 신고서 수, 조정된 총소득, 결정세액, 평균세율, 소득비중, 소득세예비중(부양가족 제외), *소득분위 50, 75, 90, 95, 99%로 구분	SOI Bulletin article—Individual Income Tax Shares, Table 2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Positive Adjusted Gross Income (AGI) Classified by Tax Percentile(조정된 총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소득분위별 신고자료)				
32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Floor on Percent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소득분위별	상위 50%까지의 신고서 수, 소득분위별 소득 기준금액, 조정된 총소득, 결정세액, 평균세율, 소득비중, 소득세예비중(조정된 총소득이 있는 신고서), *소득분위 상위 1, 5, 10, 25, 50%로 구분	웹에서만 공개
33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GI and Total Income Tax, and Average Tax Rates	소득분위별	하위 50%의 신고서 수, 조정된 총소득, 결정세액, 평균세율, 소득비중, 소득세예비중(조정된 총소득이 있는 신고서), *소득분위 하위 50, 75, 90, 95, 99%로 구분	웹에서만 공개
34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Floor on Percent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소득분위별	32번과 동일, *소득분위 세분화: 상위 0.1, 1, 2, 3, 4, 5, 10, 25, 50%로 구분	웹에서만 공개
All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Excluding Dependents Classified by Tax Percentile – Early Release(부양가족 제외한 개인소득세의 소득분위별 신고자료 - 조기공개)				
35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Floor on Percent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소득분위별	30번과 동일, 상위 50%의 소득분위별 자료 (2014~2015년 데이터 추가됨)	웹에서만 공개
36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GI and Total Income Tax, and Average Tax Rates	소득분위별	31번과 동일, 하위 50%의 소득분위별 자료 (2014~2015년 데이터 추가됨)	웹에서만 공개

자료: IRS statistic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Form 1040) Statistics, General Statistical Tables,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individual-income-tax-return-form-1040-statistics>(검색일자: 2019. 2. 15)

- **[법인소득세]** 법인세 통계는 크게 법인세수 통계, 법인의 국제조세 통계, 파트너십, S법인, 자영업자(농업/비농업으로 구분), 소비세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 **1) 법인세수 통계:** 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수 총괄, 연구개발세액공제,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관련 통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 법인의 재무제표는 ‘Corporation Source book’을 통해 산업별, 총자산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있음
 - 산업은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³⁴⁾에 따라 2013년 기준 251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의 재무제표 현황 데이터를 개별 산업별로 공개하고 있음³⁵⁾
 - 하지만 이런 산업별 분류는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여러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산업의 데이터가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다는 한계가 존재함³⁶⁾
 - 법인세수 총괄은 ‘법인세 통계연보(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³⁷⁾’에서 최종 납부세액 산출까지 각종 공제항목의 상세항목을 산업별로 공개하고 있음
 - 특히 과세대상 소득 중 배당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반사업공제 (general business credit)를 세분화한 통계표도 산업별로 공개함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항목별,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 세무조정 데이터는 법인의 세무조정신고서(Schedule M-3)를 바탕으로 세부항목별, 산업별로 통계표를 공개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34)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35) 미국 국세청, *2013 Statistics of Income - Corporation Source Book*, Industry Statistics and Their Limitations, 2013.

36) 상동

37) *Statistics of Income - Corporation Source Book*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산업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하거나 추가 설명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임

- 법인의 통계자료는 표본을 선정한 후 표본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여 작성되며, 추정에 사용된 표본자료를 공개하고 있음³⁸⁾
 - 법인 유형(C법인, S법인)별로 결손기업을 포함한 자료와 결손기업을 제외한 자료로 구분하며 C법인의 경우 3,263개의 표본을, S법인은 232개의 표본을 선정함
 - 개별신고자료는 자산규모, 총자산,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재무상태표상 항목의 금액과 신고서상 소득유형별 금액, 감가상각비, 배당소득공제액, 결손금, 산출세액,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반사업공제(general business credit) 등 기업의 신고서 'Form 1120' 및 'Form 1120s'를 통해 수집한 각종 항목을 포함함

- 2) 국제조세: 피지배외국법인의 세수통계, 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별보고서상 세수통계, 외국투자법인의 세수통계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피지배외국법인의 자산, 총매출액, 세전이익, 법인세액, 세무상 당기순이익(earnings & profit)에서 분배한 금액, 미국 지배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액, 과세대상 피지배외국법인소득(Subpart F income), 미국법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정보를 산업별로 공개하고 있음³⁹⁾
 - 국가별보고서 관련 통계의 경우 보고서 교환 국가별로 기업 수, 총매출액(특수관계자/비특수관계자 간 매출액 구분), 순이익, 소득세 납부액, 자본금, 누적이익, 종업원 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제외한 유형자산가액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의 재무제표, 비용성격별 지출액을 미국 세법상 비영리단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가 수익성사업을 수행하여 과세되는 경우 수익성사업 매출액, 총공제액, 과세대상 소득, 총납부세액을 비영리단체 유형별로 공개하고 있음⁴⁰⁾

3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corporation-source-book-data-file> (검색일자: 2019. 2. 12)

3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controlled-foreign-corporations#2> (검색일자: 2019. 2. 14)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 미국 국세청 내 소득통계국 소속 직원들은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단독 또는 외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들 보고서는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전미통계학회(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Conference), 전미세무학회(National Tax Association Conference and Symposium)에서 보고서를 발표함⁴⁰⁾
- 또한 매년 Tax Policy Center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조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함
- 최근 2년간 전미세무학회 및 미국 국세청-Tax Policy Center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 보고서는 <표 III-3>과 같으며, 납세순응, 조세채무 담보설정 또는 제3자 보고 등 특정 제도의 효과성,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표 III-3> 미국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 발간물

연도	연구주제	저자
전미세무학회(National Tax Association)		
2018	Enforcement versus Outreach - Impacts on Tax Filing Compliance	IRS 단독 연구
	Corporate Tax Audits and Corporate Tax Filing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Enforcement versus Outreach - Impacts on Tax Filing Compliance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Federal Tax Liens and Letters: Effectiveness of the Notice of Federal Tax Liens and Alternative IRS Letters on Individual Tax Debt Resolution	IRS 단독 연구

40)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charitable-and-exempt-organizations-statistics>(검색일자: 2019. 2. 14)

4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research-papers-by-conference-and-year>(검색일자: 2019. 2. 14)

연도	연구주제	저자
	The Offshore World According to FATCA	IRS, 재무부,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Encouraging Free Tax Preparation Among Paper Filers: Evidence From aField Experiment	IRS, 재무부,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The Impact of IRS Enforcement Procedures on Taxpayer Behavior: Evidence from Quasi-Random Assignment of Revenue Officers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Independent Contractor or Employee?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irms and Their Workforce and Potential Consequences for the U.S. Income Tax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The Behavioral Economics of Tax Preparer Choice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Toward a Fair and Just Tax System: A Taxpayer Rights Analysis of IRS Administration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RS 납세자보호관, Nina E Olson 단독연구
	Is Tax Planning Best Done in Private?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2017	The Effects of IRS Audits on EITC Claimants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Tax Enforcement and Tax Policy: Evidence on Taxpayer Responses to EITC Correspondence Audits	IRS, 재무부,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Independent Contractor or Employee?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irms and Their Workforce and Potential Consequences for the U.S. Income Tax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Tax Knowledge and College: Do IRS Reminder Notices Affect Tax-Based Aid Use?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Taxpayer Responses to Third-Party Income Reporting: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the Taxicab Industry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Paid Preparer Penalties: Are they Effective?	IRS 단독연구, Karen Masken
IRS - TPC 공동 학술대회		
2018	Using Behavioral Insights in Notice Design to Improve Taxpayer Responses and Achieve Compliance Outcomes	IRS 단독연구

연도	연구주제	저자
	Strategies to Address Noncompliance in Refundable Tax Credits: Evidence on Taxpayer Responses to EITC Correspondence Audits and Experimental Outreach	IRS, 재무부,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Federal Tax Liens and Letters: Effectiveness of the Notice of Federal Tax Liens and Alternative IRS Letters on Individual Tax Debt Resolution	IRS 단독연구
	Taxing Hidden Wealth: The Consequences of U.S. Enforcement Initiatives on Evasive Foreign Accounts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An Examination of Partnership Tax Return Complexity	IRS,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Can IRS Move Paper Filers to Free Assisted Tax Preparation?	IRS, 재무부, 외부교수와 공동연구
	Income-Shifting by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RS, 외부교수 공동연구
	Valuing Unpaid Tax Assessments: Estimating Long-Run Collectability Using an Econometric Approach	IRS 단독연구
2017	Impact of Filing Reminder Outreach on Voluntary Filing Compliance for Taxpayers with a Prior Filing Delinquency	IRS 소기업/자영업자 부서 및 연구부서(RAAS) 공동연구
	Supplementing IRS Data with External Credit Report Data in Employment Tax-Predictive Models	IRS 소기업/자영업자 부서 단독연구
	Better Identification of Potential Employment Tax Noncompliance Using Credit Bureau Data	IRS, 외부교수 공동연구
	Estimating the Effects of Tax Reform on Compliance Burdens	IRS, TPC 공동연구
	Counting Elusive Nonfilers Using IRS Rather Than Census Data	IRS 단독연구

자료: 1. NTA, https://www.ntanet.org/wp-content/uploads/2018/11/NTA_2018_printed_program.pdf, <https://www.ntanet.org/wp-content/uploads/2017/11/nta-conference-2017-program.pdf> (검색일자: 2019. 2. 15)

2.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2018-irs-tpc-research-conference>,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2017-irs-tpc-research-conference>(검색일자: 2019. 2. 15)

2. 영국

가. 국세통계 공개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1) 국세통계 관련 규정 및 지침⁴²⁾

- 영국 국세청은 조세징수 및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납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납세자로부터의 조세징수뿐만 아니라 각종 근로장려세제 등 세제 지원정책의 집행으로부터도 다양한 납세 정보를 취합하고 있음
 - 법인 및 개인소득세, 국가보험, 부가가치세 등에 걸쳐 연간 약 100여개의 세부 통계자료를 발표함

- 영국의 조세 통계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통계’에 해당하며, 이 중 소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증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로 인정됨
 -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는 통계자료 관련 법령⁴³⁾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된 통계자료들이 이에 해당함
 -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는 공식통계들 중 영국 통계당국(UK Statistics Authority)에서 발간하는 통계운용지침(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통계정보를 의미함

- 영국의 통계운용지침(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은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공공 통계 데이터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품

42) 영국 통계당국,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code-of-practice/>(검색일자: 2019. 2. 13)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61365/cop-confidentiality.pdf(검색일자: 2019. 2. 13)
영국 통계당국,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osr/>(검색일자: 2019. 2. 13)

43) Section 6 of the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질 기준 등을 제시한 것임

- 영국 통계당국은 공공기관이 생성하는 통계자료를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하고 공공 의사결정 및 논의에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통계운용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정부기관의 공식통계자료의 품질을 높이며 공공가치에 기여하고 그 결과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이에 따라 통계운용지침은 1차적으로는 통계 생산주체에 적용되지만 넓게는 외부 연구자, 데이터과학자, 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통계 사용자와도 관련됨
- 통계운용지침은 신뢰성, 품질 및 가치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를 생산, 운영할 것을 요구함
- 신뢰성(Trustworthiness):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 조직의 시스템 및 운영체계(process)에 관한 것으로, 해당 조직이 통계 생산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관련 능력 및 정직성을 갖출 것을 요구함
 - 품질(Quality): 통계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 각 통계자료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측정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물이 명확해야 할 것을 요구함
 - 가치(Value): 통계 데이터의 유용성과 관련된 것으로, 변화하는 사회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게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위와 같은 세 가지 원칙 각각에 대해 통계운용지침에서는 통계 생산 및 배포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들을 명시함
- 신뢰성
 - 정직 및 진실성(Honesty and integrity): 통계생산 인력의 신뢰성,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의무

- 독립적 결정 및 리더십(Independent decision making and leadership): 통계생산 조직은 통계운용지침 준수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통계자료 개선에 유의할 의무
- 체계적인 자료 배포(Orderly release): 계획적이고 공표된 절차에 따라 통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대중의 신뢰 제고
- 기타: 투명한 집행 및 관리(Transparent processes and management), 전문가적 능력(Professional capability), 데이터관리(Data governance)

○ 품질

- 자료원천의 적합성(Suitable data sources): 목적에 맞는 적합한 자료 원천 사용 및 데이터 제한 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
- 측정방법의 적정성(Sound methods): 통계 생산을 위하여 최적의 방법을 적용하고 관련 판단 기준을 공개
- 품질 보장(Assured quality): 통계치 및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적시성 등에 대해 통계생산자가 명확한 확신을 제공할 것

○ 가치

- 사용자 적합성(Relevance to users): 통계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수요 및 편의성 등을 고려
-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통계자료는 대중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며 적절한 수준에서 세부 내역도 제공할 것
- 기타: 명확성(Clarity and insight), 혁신성(Innovation and improvement), 효율성(Efficiency and proportionality)

□ 통계 생산 조직은 상기 통계운용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통계당국은 정부 기관들의 공식통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을 운영함

-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기관들은 통계운용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통계의 목적적합성, 통계 제공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국 통계당국은 관련 법령⁴⁴⁾에 따라 별도의 통계규정관리조직(Office for Statistics Regulation)을 운영함
 - 통계 생산 기관들과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영국 내 생산되는 공식통계에 대한 독자적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
 - 공식통계 생산 및 공개 과정이 공공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당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통계규정관리조직은 정부기관의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국가통계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함
 - 통계규정관리조직은 관련 의무 이행상황 검토(compliance checks) 및 통계생산체계 분석(systemic reviews)를 통해 통계생산주체들이 통계운용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함
 - 또한 국세 데이터 등 공식통계자료가 통계운용지침의 세부 원칙 및 집행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국가통계로서의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함

2) 국세통계 생산 과정 및 조직⁴⁵⁾

-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은 통계자료의 원활한 생성과 정책 개발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전담 분석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납세협력강화(tax compliance) 및 조세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세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영국 국세청(HMRC)은 디지털 자료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44)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45)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organisation-chart>(검색일자: 2019. 2. 5); 영국 국세청(HMRC) 발표자료, <http://www.maths.manchester.ac.uk/media/eps/schoolofmathematics/events/KAI-Careers-Talk-2017.pdf>(검색일자: 2019. 2. 5)
 영국 국세청(HMRC), 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 (KAI), Director of 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 (SCS PB2), Reference 1457799, July 2015; 영국 정부, <https://data.gov.uk/organogram/her-majestys-revenue-and-customs>(검색일자: 2019. 2. 5)

역량을 기르는 것을 주요 조직 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국세통계 생성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내에 '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KAI)라는 통계분석 전담조직을 운영함

- KAI는 400여명 이상의 통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조세 통계 분석 및 리서치 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데이터 과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 사회과학자, 기타 연구자(operational researchers) 등 전문 분석가들로 구성됨
 - 런던, 맨체스터 및 리버풀 등 주요 도시에 전문가들을 두고 운영됨
 - 조세 관련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공개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및 이슈 연구 등을 통해 국세청 조직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KAI는 국세청 내부 조직들뿐만 아니라 재무부 등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납세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분석 품질을 제고하는 활동을 활발히 수행함
 - 재무부(HM Treasury)와의 협업을 통해 조세수입 예산을 추정하고 관련 재정 정책 개발을 위한 분석 업무를 수행
 - 과세당국의 조세징수 효율성 제고 및 납세협력 증진 방안을 개발
 - 조세격차(tax gap)을 추정하고 납세의무 미이행 수준과 관련 요인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포함함
 - 국세청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납세자 행태 연구 등 다양한 분석 활동을 통해 과세당국 업무를 지원함
 - 납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사회과학 분석 보고서의 설계, 관리, 출판 업무
 - 과세당국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각종 분석 기법 개발 등
 - 기타 납세 관련 데이터 활용 증대 및 분석기법 향상을 위해 국세청 여러 조직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확대하고 있음

- 영국 국세청(HMRC)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자료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원자료를 내부 시스템상에서 확보하여 가공하는 방식으로 집계됨⁴⁶⁾
 - 국세통계 보고서 생성을 위하여 별도의 자료를 입수하기보다는 기존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내부행정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통계자료 확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적시성 있는 통계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음

- 영국 국세청(HMRC)의 통계 보고서 생성을 위해 활용하는 행정시스템 및 데이터는 기본적인 세수입 자료에서부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인소득 정보 등 다양함
 - 영국 국세청(HMRC)이 출간하는 통계 보고서의 주요 자료 원천은 국세청 내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집계된 과세 관련 원자료들임
 - 각종 세수입 정보,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 자료 등을 포함
 - 이러한 세무행정 자료들은 통계보고서 생성 이외에도 기타 행정 목적상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행정효율 개선을 위한 내부관리 목적, 의회 질의응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등

- 국세통계 생성을 위하여 영국 국세청(HMRC)의 통계 전문가들은 각 관련 행정조직과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 자료들을 수집하는 절차(protocol)를 확립함
 - 영국 국세청(HMRC) 통계 전문가들은 국세청 내의 IT 시스템 구축 및 업데이트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적합한 통계 생성에 일조함
 - 수집하는 전산 데이터 내용 및 양식의 결정 등 국세통계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관부서와 협조함
 - 관련 행정조직이 보유한 세무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함

46) 영국 국세청(HMRC) Statement of Administrative Sources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⁴⁷⁾

- 전체 세목에 대한 개괄적인 통계로서 조세 수입 및 납세자 현황 및 관련 세부내역을 공개함
 - 영국 국세청(HMRC)이 징수한 전체 세수 합계액의 연도별 추이와 주요 세목별 구성 비율 등을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와 함께 제시함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별로 각각의 세수입 실적과 연도별 추이를 일관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높임
 - 각 세목별로 개인납세자 및 사업자 수를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연도별로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추세를 분석할 수 있음
 - 주요 세목별 조세감면(tax relief) 제공 규모 및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

- 개인에 대한 조세(personal taxes) 통계자료는 개인소득세를 위주로 자본이득세, 상속세, 연금 및 비과세저축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포괄함
 - 각 세목별로 세수입 구성, 연도별 추이 등을 도표를 활용하여 제시함

- 개인소득세의 경우 징수실적, 조세채무, 원천징수, 기타 조세혜택 등의 다양한 세부 통계자료를 포함함
 - 연도별 세율 및 소득공제, 세액감면 규모를 장기간 추이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개인소득세 과세체계를 개괄함

47)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6210/20190131_영국_국세청\(HMRC\)_Announcements.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6210/20190131_영국_국세청(HMRC)_Announcements.pdf)(검색일자: 2019. 2. 3)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about/statistics>(검색일자: 2019. 2. 3);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6209/20190131_Scheduled_calendar.pdf(검색일자: 2019. 2. 3)

- 개인소득세 세수입 실적을 원천징수, 자진신고, 세무조사 등의 징수 체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납세자의 소득 및 개인소득세 채무 현황에 대한 통계는 세부 내역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제시함
 - 지역별 납세자 숫자 및 고세율 적용 대상자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
 - 상·하위 소득자 간의 구성 비율 및 최상위 소득자 비율 등 소득 배분과 관련된 정보
 - 소득 구간별 납세자 규모 및 조세채무 현황
 - 조사대상 가구들의 총소득 대비 세부담율
 - 납세자가 지원받는 각종 현물보조(taxable benefits in kind) 규모 및 구성 내역, 이와 관련된 소득세 채무 등
- 기타 개인 관련 조세 항목으로서 자본이득세 및 상속세 등의 세목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각종 연금 및 세제혜택에 대한 통계도 제공함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에 대한 설명, 정책 변화, 납세자 수 및 자본이득 규모, 관련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부 내역 제시
 - 상속재산 구성, 자산 가치, 적용 세율, 공제 감면, 상속세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시
 - 자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내역,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 규모 등에 대한 통계
 - 개인의 재산(wealth) 구성 내역 및 분배 정도에 대한 분석 내용
 - 개인연금의 종류 및 재원, 연금 관련 과세 내역, 연금 가입자 현황 및 관련 조세감면 혜택 등
- 사업 관련 조세(Business Taxes)로는 법인세를 위주로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에 대한 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법인세 관련 통계는 관련 세수입 내역에 대한 세부 정보와 연구개발 및 특허 관련

세액 공제 등의 세부 통계자료를 포괄함

- 산업·업종별 법인세 세수, 연도별 세수입 추이 등의 개괄적 현황을 제시
- 과세대상 소득의 세부 구성, 비용 공제 규모, 세액공제, 법인세 납부 실적 등을 업태 및 산업, 연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연구개발세액공제 규모, 신청 법인 업종 및 업력 등 세부 분석 결과 제시
-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신청 법인 숫자, 관련 조세감면 규모, 신청법인의 업종 및 회사규모, 지역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 부가가치세 및 각종 물품세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세부내역을 전산데이터 형태로 공시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간 세수 및 동향에 대하여 개괄적 통계분석 자료를 별도로 제시함
 - 연도별 세수 추이, 납세자 구성, 업종별 분포, 납세자 매출 규모 및 사업자등록 현황 변천 등
- 부가가치세와 각종 물품세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세원 및 세율 관련 세부자료를 전산데이터 파일 형태로 게시함(bulletin)
 - 물품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항목들의 과세가액 등 세부 내역
 - 월별, 연도별 세액 징수 상세 내역
 - 물품세율 등 변동 내역 및 과세 변천 내용 등

〈표 III-4〉 영국 국세청(HMRC)의 주요 국세통계 발표 항목

국세통계	국가/공식 통계 구분	발표 주기
세수 및 납세자 현황(Tax Receipts and Tax Payers)		
영국 국세청(HMRC)의 세수입 현황	National Statistics	월별
영국 국세청(HMRC) 세수입의 연방국가별 구성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원천징수 및 법인세 세수입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납세자 및 등록사업자 숫자	Official Statistics	반기별

국세통계	국가/공식 통계 구분	발표 주기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직접 영향	Official Statistics	반기별
조세감면 관련 통계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개인 세금 (Personal Taxes)		
자본이득세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자선단체 기부금 및 관련 조세감면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상속세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신탁 관련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개인 재산 관련 통계	National Statistics	매3년
고용 관련 소득공제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소득세 세수입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소득세 조세채무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급여 원천징수 소득세 현황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개인 소득 분포도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개인 소득의 지역별 현황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현물급여 등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현황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개인저축계좌 관련 세부내역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종업원 주식취득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개인연금 현황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연금 납입금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변동 연금지급 내역	Official Statistics	분기별
해외 연금 현황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사업 관련 세금(Business Taxes)		
법인세 세수 및 조세채무	National Statistics	반기별
연구개발 세액공제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영국 유류 생산 관련 정부세수	National Statistics	반기별
창의적 산업 관련 통계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특허박스 관련 세액감면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토지 관련 인지세 현황	National Statistics	분기별
영국 내 재산거래 현황	National Statistics	월별
연간 인지세 통계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특정주거용 부동산(enveloped dwellings) 세금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부가가치세	National Statistics	분기별

국세통계	국가/공식 통계 구분	발표 주기
담배, 주류 등의 각종 물품세	National Statistics	분기별
기업투자 및 창업기업투자 세제지원 현황	National Statistics	반기별
벤처캐피탈 신탁 현황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세액공제 및 자녀 관련 세제지원(Tax Credits and Child Benefit)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세액공제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유럽경제지역 국적자에 대한 소득세 및 세액공제 내역 등	N/A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현황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자녀 관련 세제지원의 지역적 분석 등	National Statistics	연도별
조세격차(Tax Gaps)		
조세격차 측정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부가가치세 격차 추정	Official Statistics	비정기적
성별 격차 통계(Gender Pay Gap Statistics)		
성별 소득 격차 보고서	Official Statistics	연도별
무역 관련 통계(Trade Statistics)		
해외무역 통계	National Statistics	월별
역내무역 통계	National Statistics	분기별

자료: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6209/20190131_Scheduled_calendar.pdf(검색일자: 2019. 2.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⁴⁸⁾

- 영국 국세청은 방대한 납세 데이터를 연구목적상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과세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연구자에게 과세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Datalab)를 2011년도에 도입하였음

48)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hmrc-datalab-datasets-available>(검색일자: 2019. 2. 4)
Richard Welpton and Melanie Wright, *영국 국세청(HMRC) Datalab: Engaging with the External Research Community*, March 2011;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3411/DatalabProposalsApproved_November2018.pdf(검색일자: 2019. 2. 4)

- 국세청은 매년 방대한 과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적해 왔으나 납세자기밀 보호 등의 문제로 해당 데이터의 활용은 제한적이었음
 - 데이터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납세 데이터의 연구 활용이 매우 제한됨
 - 그러나 비밀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납세데이터를 연구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 품질을 높이고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연구자들이 학문 목적상 기밀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과학적 용도에 활용하는 것은 비밀보호의무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공식적으로 천명됨(EC Regulation No 223/2009)
 - 이에 영국 국세청(HMRC)은 2011년도에 Datalab을 창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자들에게 과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고 정책 개발과도 연계하고 있음
- 영국 국세청(HMRC)의 Datalab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승인된 외부 연구진들에 한해 납세 관련 기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데이터 제공 장소는 영국 Central London의 Bush House에 소재해 있으며, 자료 제공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운용함
 - 사전 승인된 연구진들에게 자료 접근을 위한 전산 계정을 부여하며, 해당 장소에서 동 계정을 통해 납세 관련 미시자료(micro-data)에 접근할 수 있음
 - 연구진들은 해당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각자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연구분석 결과물은 해당 전산계정에 저장되며 Datalab 직원을 통해 이메일로 동 결과물을 전송받게 됨
- Datalab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는 연구기관 소속 등으로 제한됨
- Datalab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연구기관(academic

- institution)이거나 정부 부처(government department)로 한정됨
 - 영리 단체는 Datalab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적 연구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Datalab 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2018년 4월부터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상업적 연구자(commercial research groups)의 경우에도 사용 신청이 가능함
 - 외국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영국의 대학교,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경우에만 Datalab 사용이 가능함
- Datalab를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 연구진들은 연구 내용과 방향을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Datalab 데이터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소정의 신청양식(영국 국세청(HMRC) Datalab Project Proposal)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연구의 내용 및 영국 국세청(HMRC) 데이터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유용성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연구진의 인적사항 및 대표 연구자
 - 연구프로젝트의 개요 및 수행 시기, 목적 등
 - 연구 방법론 및 예상 결과, 출판 계획 등
 - 활용하고자 하는 영국 국세청(HMRC) 데이터 내역 및 필요 사유
 - 해당 연구를 통해 영국 국세청(HMRC)이 얻을 수 있는 혜택 및 국세청과의 협력 여부
 - 기타 연구 관련 정보 등
 - 이외에도 Datalab 측에서 해당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연구진들이 제출한 신청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연구계획의 충실성 및 예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Datalab 측에서 데이터 허용 여부를 결정함
- 아래와 같이 영국 국세청(HMRC) 정책 목표와의 적합성 등을 위주로 승인 여부

를 결정함

- 영국 국세청(HMRC) 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
 - 장기적 관점에서 영국 국세청(HMRC)에 대한 긍정적 혜택 제공 여부
 - 연구 설계의 타당성 및 연구 결과의 영향력 정도
 - 연구 방법의 실현 가능성 등
- 이외에도 영국 국세청(HMRC)에서는 적시성이 높은 연구 주제를 선호하며, 독립적인 연구 주체가 출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일 것을 요구함

□ 영국 국세청(HMRC)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연구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프로젝트를 승인해 왔음

- 납세자 행태 분석 및 행위 동기에 대한 이해, 조세 정책 및 세무행정에 미치는 영향
 -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납세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한 분석
 - 납세자 행태의 모델링 및 관련 조세정책 디자인 등
-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경제적 효율성 검토 및 최적화
 -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 및 납세협력부담 수준 조사
 - 조세징수비용 대비 한계 세수 등의 비교 분석 등
- 납세구조 및 조세정책 변경의 효과 추정 및 관련 분석 모델 개선
 - 조세정책 변경에 대한 납세자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각종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납세자 반응 예상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추정
-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조세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
 - 조세정책 설계를 위하여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는 입증자료 및 분석 방법 등과의 비교

〈표 III-5〉 영국 국세청(HMRC) Datalab에서 승인한 주요 연구주제 예시

연구주제 유형	연구수행 주체	연구프로젝트 제목
대학	London School of Economics/ Imperial Colleg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s and company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Estimating the elasticity of corporate income
	Oxford University	The Economic Effects of VAT on Business Behaviour
	Oxford University	The UK Stamp Duty Land Tax: welfare effects and incidence
	Nottingham University	What happened to UK export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niversity of Essex	Modelling Export Activity and its Effect on Firm Productivity, Wages, Profitability, and the Tax Base
	University of Greenwich	Evalu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s, Firm Survival, Firm Growth and Employment: UK Evidence
	Bournemouth University	A Comparison by Industrial Sector of the Potential Effects of Indirect Taxes with Effective Rates of Corporation Tax
	University of Strathclyde	Designing resilient supply networks
	London School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e Frequency of WTC/CTC Payment and Their Effect on Labour Supply
	University of Sussex	Granularity in trade in value-added data for key sectors - Manufacturing
	Cambridge University	Impact of trade shocks on UK firms and labour markets
	Columbia University	Behavioural response to taxation of personal foreign incom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Using Economic Advantage and Disadvantage in Self-Employed Families Under Welfare Reform
공공기관 등 기타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o what extent do those on high incomes respond to changes in marginal tax rate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	Business Population Estimates, National Statistics

연구주체 유형	연구수행 주체	연구프로젝트 제목
	Welsh Government	Analysis of stamp duty land tax revenues in Wale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	Income of the Self Employed
	NCVO(The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Analysis of Charities claiming Gift Aid
	Tax Administration Research Centr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Understanding the spread of information in network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n the UK
	Centre for Cities	Wages across UK Cities
	National Assembly for Wales	Analysis of the Survey of Personal Incomes, Self-Assessment and PAYE Data
	Scottish Government	Analysis of Stamp Duty Land Tax Revenues in Scotland
	Centre for Entrepreneurs	Analysing student loan earnings for self-employed graduates
	Centre for Progressive Capitalism	Assessment of economic impact of EIS/VCT schemes on UK economy
	Bank of England	Global value chains in goods and services in the UK after Brexit
	Scottish Fiscal Commission	Creating a database to forecast Scottish LBTT tax receipts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Economic Impacts of Migration to the Wages and Employment in the UK: Research for the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Frontier Economics on behalf of Department International Trade	Impact evaluation of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s export promotion activities
	Economics Statistics Centre of Excellence	Using administrative data to improve labour market statistics

자료: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3411/DatalabProposalsApproved_November2018.pdf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영국 국세청(HMRC) Datala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세부 종류 및 민감도 정도에 따라 외부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절차에 차이가 있음
 - 개별 납세자의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된 원시자료들은 연구진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 이와 반대로 익명성이 보장된 집합데이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다른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음
 - 일례로 통계청이나 기타 정부기관에서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등을 포함
 - 이러한 양 극단적 경우 이외의 데이터의 경우 해당 자료의 세부 속성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 과정에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과세 데이터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최종사용허가(End-User License)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함. 이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적법하게 사용할 것에 동의하고 특히 납세자 신상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며, 당해 연구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 받음
 - 최종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은 납세자의 개별 정보가 드러날 수 없도록 다소 정제된 형태임(예: 지역적 정보는 우편번호 대신 행정관할구역 정도에 그치며, 개별 납세자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개략적 연령대 정보만 주어짐)
 - 일부 경우에는 특별허가(Special License)를 받아 보다 자세한 납세자 자료(소재지명 및 상세 연령 정보 등)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연구자는 자료 사용 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 건별로 관련 데이터 생산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Datalab 사용 허가를 받은 연구자들은 소정의 교육 연수를 받고 해당 납세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데이터 사용 신청을 한 연구자들은 교육 시간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법령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무 준수 사항
- 제공받은 데이터로부터 개인 신상을 유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의무조건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에 대한 숙지
- 기타 데이터 제공 절차에 대한 교육
- 보다 원활한 연구를 도모하고 연구진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납세 데이터 제공은 무상으로 이루어짐

3. 일본

가. 국세통계 공개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

1) 국세통계 관련 규정

- 일본 국세청이 매년 발행하는 국세통계인 ‘민간급여 실태조사’와 ‘기업 표본조사’ 등은 「통계법」에 의해 작성됨⁴⁹⁾
 - 급여소득자의 급여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보여주는 ‘민간급여 실태조사’와 기업의 자본규모별 또는 업종별 현황 등을 매년 실시하는 ‘기업 표본조사’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계에 해당됨
- 일본의 기간통계는 국가 행정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총무 장관이 지정한 통계 조사를 의미함
 - 현재 기간통계 목록으로 56개를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 행정기관이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계법」 규정에 의해 미리 총무장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⁵⁰⁾

49)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h30minkyu/qa.htm> (검색일자: 2019. 1. 7)

50)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8.htm(검색일자: 2019. 2. 8)

- 국가 기본통계의 종합적인 조정은 통계국 통계기준부가 설정함
 - 공적통계의 통일성 또는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계기준 설정은 총무장관이 수행함
 - 국세청의 통계에 사용되는 「일본표준산업분류」의 기준도 총무장관이 통계기준을 설정하여 고지함(「통계법」 제28조)⁵¹⁾

- ‘민간급여 실태조사’는 전국적인 정책을 기획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통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1949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음⁵²⁾
 - 민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1년간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세수입을 예상하여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토 및 세무행정 운영 등의 기본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민간급여 실태조사’를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매년 외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이 70번째 조사에 해당됨
 - 「국가행정조직의 축소 및 효율화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공공서비스개혁법」에 근거하여 ‘민간급여 실태조사’는 민간위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함

- ‘기업 표본조사’는 법인 기업에 대한 자본별 또는 업종별 현황을 보여주고, 세수입 예상 및 세무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95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세통계연보』에 게재되고 있음
 - ‘기업 표본조사’는 표본조사로 조사대상 법인(모집단)에서 자본 및 업종별 등의 방법으로 표본기업을 선별하여 표본기업의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계수를 추정함

51)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1-1n.htm(검색일자: 2019. 2. 7)

52) 「통계법」 제2조 제4항 제3호;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houbun2n.htm(검색일자: 2019. 2. 8)

2) 통계 담당 조직

- 일본의 국세청은 본청 아래 전국 12개 국세국(오키나와 국세 사무소를 포함)과 524의 세무서가 있음⁵³⁾
 - 2018년 기준 본청의 총인원은 984명(1.8%), 12개 국세국은 11,851명(21.3%), 524개 세무서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42,044명(75.5%)임
 - 통계생산 담당과는 국세청 본청의 기획과 조사통계팀에서 국세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원 수는 파악하지 못함
 - 다만 총무성에서 발행한 통계 담당 직원 수 자료를 보면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무성(국세청 포함)의 통계 담당직원은 22명(지방부처 52명)으로 파악됨⁵⁴⁾
 - 일본 전체 통계 담당 직원 수 1,940명 중 총 74명으로 3.8%정도를 차지함
- 전국 12개 국세국의 총무부 기획과는 국세 신고 내역 등 통계자료를 국세청 조사 통계계에 제공함
 - 도쿄 국세국의 총무부에는 총무과, 세리사감독관, 인사과, 회계과, 기획과 등이 있으며, 이 중 기획과에서 자료를 담당하고 있음⁵⁵⁾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1) 개요

- 일본의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연보』 발간물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

53)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about/introduction/shokai/kiko/kikou.htm>(검색일자: 2019. 1. 21)

54)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2-2.htm(검색일자: 2019. 1. 21)

55)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tokyo/shokai/pdf/kiko.pdf>(검색일자: 2019. 1. 21)

-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구성은 총 6편으로 나누어 직접국세, 간접국세, 징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의 경우 세목마다 통계를 배열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I. 총괄편, II. 직접국세편, III. 간접국세편, IV. 징수편, V. 기타, VI. 양식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20여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전국 통계를 게재하고 있지만 주된 항목의 경우 지방(국세국 및 시도부현별)의 통계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음
-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민간급여 실태조사’ 및 ‘기업 표본조사’,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의 총괄적인 부분만을 보여주며,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에 제공되는 통계정보를 참조해야 함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과의 세수입 비중 비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III-6〉 일본 국세청 통계 제공 현황

구분	통계 제공 내용
국세청 통계 제공 현황	• 표본조사결과(민간급여 실태조사, 기업 표본조사,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 • 통계연보 1. 개요, 조세 및 인지 수입, 조세부담률 2. 소득세 신고, 원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3. 소비세, 주세, 간접세금 4. 국세징수·국세채납·환급 5. 직간접 국세 범칙 사건, 불복심사 소송사건, 세무사, 기타
지방 국세청 통계 제공 현황	2006~2011년(2005~2010년, 2000~2004년 통계도 제공) 1. 총괄 2. 직접세: 소득세 신고, 원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3. 간접세: 소비세, 주세, 간접세금 4. 국세 징수·국세 채납·환급 5. 기타: 불복심사소송사건, 직간접 국세 범칙 사건

2) 국세통계 공개항목

- 국세청 통계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이루어져 있음⁵⁶⁾
 - 전수조사는 각 세무서에서 조사한 것을 국세청 및 각국 국세국에서 정리해 집계한 것임
 - 세무서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생성되는 자료임

- 표본조사는 민간급여 실태조사, 기업 표본조사 및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간급여 실태조사’는 국세청에서 표본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원천징수의무자)를 추출, 민간사업소에 조사표를 송부하여 표본사업장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에 대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국세청에서 집계한 것임
 - ‘기업 표본조사’ 및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는 각 세무서 등이 작성한 조사표 데이터 등을 국세청에서 집계한 것임

가) 민간급여 실태조사

- 민간급여 실태조사는 국세청에서 표본이 되는 사업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 사업장은 각 국가 세무국(소)를 통해 국세청장이 위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사표를 송부함
 - 표본사업장이 작성하는 조사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됨
 - 표본사업장에서 제출한 조사표는 민간사업자가 기입 미비 및 오류 등을 확인하고 데이터화된 후 국세청 기획과에 집계됨

56) 일본 국세청, 『국세청통계연보 142호』, <https://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h28/h28.pdf>(검색일자: 2019. 1. 11)

- ‘민간급여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은 표본사업장 추출과 표본급여소득자 추출 2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표본사업장 추출은 관할 세무서별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출하고, 표본급여소득자는 표본사업장의 임금내역을 바탕으로 2,000만엔 이하의 급여소득자는 종사 근로자수별 추출율에 의해 추출하고 2,000만엔 초과인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수 추출함
 - 표본비율은 근로자 수가 9명 이하는 0.25%이며, 1,000명 이상 사업소와 본사의 경우 표본비율은 100%임

〈표 Ⅲ-7〉 민간급여 실태조사 표본조사 개요(2017년)

조사내용	각 사업소 종사 근로자 수(명)	전체 사업장의 추출율	표본 사업소	표본 급여소득자 수 (명)	통계공개
기업규모별·업종별·연령별·근속연수별 평균급여, 급여액 분포, 급여세액 분포 등	1~9	1/400	7,251	14,981	개요: 통계조사분의 다음해 9월 통계표: 통계조사분의 다음해 11월
	10~29	1/200	2,524	16,910	
	30~99	1/60	3,012	25,926	
	100~499	1/15	3,934	34,539	
	500~999	1/3	2,264	31,490	
	1,000~4,999	1/1	4,294	90,247	
	5,000 이상	1/1	694	56,132	
	본사 ¹⁾	1/1	3,022	46,660	
	합계	-	26,995	316,885	

주: 1) 본사는 종업원 500명 미만이며,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 본사를 의미함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minkan/gaiyou/2017.htm#a-02>(검색일자: 2019. 2. 7)

- ‘민간급여 실태조사’자의 특징은 근로소득자 1인 사업장에서 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이며, 소득금액 수준별, 성별, 연령별 및 근속연수별 급여소득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전국 부분의 개요는 매년 9월 말에 발표하고, 세부사항은 11월 말에 통계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조사대상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민간사업장에 한정)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소득세 납세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인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과 임원을 대상으로 함
 - 일용근로자 및 파트타임근무자 등의 근로소득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통계에 사용되는 업종분류는 「일본표준산업분류(총무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1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며, 업종분류 시 조사대상사업소가 속하는 업종에 의해 분류하며, 사업장 업종에 따르지 않음
 -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 숙박업·음식서비스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물품임대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운수업·우편업, 정보 통신업, 의료복지, 학술 연구·교육·학습지원업, 복합서비스사업, 서비스업, 농림수산·광업 14가지로 분류함
 - 조사대상 회사 사업이 철도이고 추가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경우 표본사업장의 업종이 부동산업이라 하여도 그 업종 구분은 운수업·우편업으로 집계하고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 및 급여소득자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소재지(주소), 기업의 주요 업무, 급여소득자용 조사표의 인원, 자본, 근로소득자 수, 연간 급여지급총액, 급여지급총액에 대한 연간 원천징수세액 등임
 - 근로소득자에 관한 사항: 근로소득자의 성명, 성별, 연령, 근속 연수, 연간 급여 수령개월수, 연말정산 유무, 부양친족 내역, 소득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 납부세액 등임
- 통계자료는 크게 조사결과 개요와 통계표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음

- 조사결과 개요는 민간급여 동향과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소득자 항목으로 구분함
 - 민간급여 동향에는 근로소득자 수, 소득금액, 납부세액을 보여줌
 -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소득자⁵⁷⁾ 항목에는 근로소득자 수, 급여총액, 평균급여, 급여별 분포 현황, 세액(급여별 세액), 연말정산을 한 자의 부양인원, 배우자 특별공제, 보험료공제를 보여줌
- 통계표는 전국집계표와 지방국세청별 집계표로 나누어 근로소득자 수, 소득금액, 세액, 사업장규모 및 소득금액별로 구분함
 - 일본의 특징은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소득자와 1년 미만 근로자를 구분하여 통계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로자를 임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해당 근로자 수, 소득금액, 평균급여를 공개하고 있음

57)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 근로의 급여지급을 받은 달이 12개월인 자를 의미함

〈표 Ⅲ-8〉 민간급여 실태조사 제공 항목

구분	통계 제공 내용
조사결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급여 동향(근로소득자 수, 급여총액 및 세액) •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소득자의 수, 급여총액, 평균급여, 급여수준별 분포, 세액 등
통계표	표1 근로소득자 수·급여·세액 표2 근로소득자 수·급여·원천징수의무자수 표3 근로소득별 총괄표(1년 동안 근무한 근로소득자, 1년 미만 근속자) 표4 사업장 규모별 및 근로소득별 총괄표(근로소득자 수, 급여총액) 표5 사업장 규모별 및 근로소득별 급여소득자 수, 급여수준 표6 주식회사(자본금별) 규모별 급여수준별 총괄표(임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급여소득자 수, 급여총액, 평균급여, 1년 미만 근속자 수) 표7 급여수준별 남녀 근로자 수, 평균연령, 평균근속연수 등 표8 업종별 및 급여수준별 총괄표 표9 업종별 및 급여수준별 근로소득자 수와 급여수준 표10 사업장 규모별 및 연령별 근로소득자 수와 급여수준 표11 기업규모별 및 연령별 근로소득자 수와 급여수준 표12 업종별 및 연령별 근로소득자 수와 급여수준 표13 사업장 규모별 및 근속연수별 근로소득자 수와 급여수준 표14 기업규모별 및 근속연수별 근로소득자 수와 급여수준 표15 업종별 및 근속연수별 근로소득자 수와 급여수준 표16 급여수준별 납세자 수와 면세자(1년 근무한 급여소득자와 1년 미만 근속자) 표17 급여수준별 공제 총괄표 표18 급여수준별 부양인원 표19 급여수준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수, 급여수준, 세액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minkan/gaiyou/2017.htm#a-02>(검색일자: 2019. 2. 7)

나) 기업 표본조사

□ ‘기업 표본조사’의 표본법인 비율은 자본금에 따라 다름

- 자본금 1억엔 초과~10억엔 이하는 49.6%이며, 자본금 10억엔 초과와 연결법인의 표본법인비율은 100%임

〈표 Ⅲ-9〉 기업 표본조사 개요(2016년)

내용	구분	표본법인비율 ²⁾	통계공개	
자본금, 영업손익, 이월결손금, 총당금, 기부금, 교제비, 유보금 등	회사 등	자본금 500만엔 이하	61.3%	통계조사분의 후년 3월
		자본금 500만엔 초과~1,000만엔 이하	64.5%	
		자본금 1,000만엔 초과~5,000만엔 이하	66.2%	
		자본금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57.3%	
		자본금 1억엔 초과~10억엔 이하	49.6%	
		자본금 10억엔 초과	100.0%	
	연결법인	100.0%		
	전체법인 ¹⁾	62.7%		

주: 1) 전체 표본기업 수는 166만 5,657개업

2) 표본법인비율은 표본기업 수를 조사대상법인(모집단) 수로 나눈 것임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kaishahyohon/toukei.htm#chu-shutsu>(검색일자: 2019. 2. 7)

- 기업 표본조사의 조사대상은 내국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 등은 제외)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함
 - 전체법인 수, 자본금, 영업이익 등을 조사대상 법인의 확정신고서 등으로부터 얻은 표본값에 표본법인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표본조사임
 - 통계 제공시기는 각 사업연도 이후 2년째 되는 해의 3월 말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

- 통계에 사용되는 업종분류는 「일본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17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7가지로 세분화), 도매, 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운수통신공익사업, 서비스업의 17가지 업종으로 분류함
 - 업종의 분류는 그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분류됨
 - 예를 들어, 물산업(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식료품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하더라도 모두 포함한 계수를 농림수산업으로 계상함

- 법인을 업종별, 자본금규모별, 법인종류별(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동회사, 기타), 수입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함
 - 통계자료는 크게 조사결과 개요와 통계표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음
 - 조사결과 개요에는 기업의 통계작성 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계에 사용된 개념 설명, 표본정밀도 계산 등의 항목과 법인기업의 동향(자본금별 비율, 법인 수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음
 - 통계표는 총 11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괄표에는 업태별, 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인 통계 제공항목은 업태별로 다음 표와 같이 제공하고 있음

〈표 Ⅲ-10〉 기업 표본조사 제공 항목

구분	통계 제공 내용
조사 및 결과 개요	조사개요, 정밀도 계산, 법인 동향
통계표	표1 총괄표 표2 자본금, 수입금액, 신고소득 표3 이월결손금 표4 이익처분 표5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등 표6 기부금, 교제비 등 표7 감가상각비 등 표8 유보금 표9 수입금액, 자산규모별 법인 수 표10 수입금액, 업종별 수입금액 표11 법인종류별 수와 비중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kaishahyohon/toukei.htm#chu-shutsu>(검색일자: 2019. 2. 7)

다)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

-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는 신고 소득세 납세자의 소득구분별, 소득종류별 구성과 소득계층별 분포 및 각종 공제 상황 등을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은 매년 소득세 신고에 대해 다음해 3월 31일 신고 납세액이 있는 자이며, 소득금액이 있어도 신고납세액이 없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전국 524개 세무서의 소득구분별·합계소득 수준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함
- 통계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득을 ① 사업소득 ② 부동산소득 ③ 근로소득 ④ 기타소득과 4가지 소득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총 5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분금액을 비교하여 통계표가 제공됨
-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는 각종 소득금액 중 해당 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액보다 큰 납세자를 의미함
-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의 표본 수는 약 1,340천명 정도이며, 표본비율은 소득구분별로 7.7%에서 100%임
- 2010년부터 국제전자신고·납세시스템(eTax)에 의해 제출된 확정신고서 등 전자데이터를 활용해 표본 수를 확대하고 있음

〈표 Ⅲ-11〉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 표본비율(2016년)

(단위: %)

합계소득금액	소득구분				다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70만엔 이하	22.60	24.40	8.90	12.60	21.30
70만엔 초과~100만엔 이하	24.50	23.80	8.70	12.30	21.00
100만엔 초과~150만엔 이하	26.20	25.20	7.70	9.80	20.00
150만엔 초과~200만엔 이하	28.30	27.10	7.70	9.30	19.00
200만엔 초과~250만엔 이하	29.70	28.10	8.40	9.80	19.30
250만엔 초과~300만엔 이하	30.70	29.40	9.20	10.40	19.10
300만엔 초과~400만엔 이하	32.20	30.30	10.70	12.60	18.80
400만엔 초과~500만엔 이하	33.80	32.00	12.10	14.00	19.80

합계소득금액	소득구분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
500만엔 초과~600만엔 이하	35.80	33.40	12.80	14.60	18.60
600만엔 초과~700만엔 이하	37.20	34.60	13.20	15.70	18.10
700만엔 초과~800만엔 이하	37.70	35.60	14.40	17.00	18.30
800만엔 초과~1,000만엔 이하	39.10	36.40	15.10	18.50	21.50
1,000만엔 초과~1,200만엔 이하	40.60	37.50	16.60	23.70	22.10
1,200만엔 초과~1,500만엔 이하	42.20	38.10	17.20	27.00	23.10
1,500만엔 초과~2,000만엔 이하	43.80	38.90	18.70	30.10	24.40
2,000만엔 초과~3,000만엔 이하	45.50	39.30	26.40	31.00	26.80
3,000만엔 초과~5,000만엔 이하	45.00	40.30	34.50	43.90	30.20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44.90	40.80	37.50	59.40	34.50
1억엔 초과~2억엔 이하	51.90	40.30	48.10	97.80	36.10
2억엔초과~5억엔 이하	98.90	100.00	99.10	100.00	99.30
5억엔초과~10억엔 이하	96.80	100.00	100.00	100.00	99.50
10억엔 초과~20억엔 이하	100.00	-	100.00	100.00	100.00
20억엔 초과~50억엔 이하	100.00	-	100.00	100.00	100.00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	-	-	100.00	100.00
100억엔 초과	-	-	-	-	100.00

주: 표본 수는 사업소득자 535,661명, 부동산소득자 337,797명, 근로소득자 310,662명, 기타소득자 83,418명이며, 다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자 73,273명, 총 1,340,811명임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shinkokuhuyohon/gaiyou/2016.htm>(검색일자: 2019. 2. 12)

-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 통계자료는 조사결과 개요와 통계표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음
 - 조사결과 개요에는 신고 납세자 수, 소득금액과 세액의 총괄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며, 연도별 증감 비율도 함께 보여주고 있음
 - 통계표는 총 10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괄표에는 소득구분별, 소득금액별 인원수와 금액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통계 제공항목도 소득구분별, 소득금액별로 제

공하고 있음

〈표 Ⅲ-12〉 신고 표본조사 제공 항목

구분	통계 제공 내용
조사 및 결과 개요	신고납세자 수, 소득금액과 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도별 증감비율, 소득구분별, 소득금액별 증감비율 등
통계표	표1 총괄표 표2 소득종류별, 소득금액별 표3 소득공제 표4 세액공제 표5 원천징수세액 표6 청색신고자 등 표7 근로소득 수준별 표8 공적연금 등의 소득수준별 표9 부양인원별 표10 「조세특별조치법」 관련 항목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shinkokuhuyohon/gaiyou/2016.htm>(검색일자: 2019. 2. 12)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본래 목적 이외로 이용 및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⁵⁸⁾ 통계연구나 교육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이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학술 연구 목적, 대학 등의 고등교육 목적(「통계법」 제34조), 익명 데이터(조사 통계표 정보를 개인이나 기업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것)를 제공받아 통계 작성에 사용할 수 있음(「통계법」 제35조, 제36조)
 - 익명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함

- 국가통계센터의 익명데이터 제공은 총무성의 인구조사, 노동력조사, 주택·토지통계 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 사회생활기본조사와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만 해당되며 국세통계자료는 포함되지 않음⁵⁹⁾

58) 「통계법」 제40조

- 익명데이터는 제공파일당 8,500엔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학술연구 및 고등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제공된 익명데이터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통계센터에 반환하고 연구성과 공표 및 이용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적통계 마이크로 데이터의 경우 내각부의 소비동향조사,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와 총무성의 가계조사, 인구조사, 가계소비상황조사, 취업구조 기본조사 등이 해당됨
 - 재무성은 연도별 법인기업 통계조사와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만 제공함⁶⁰⁾

4. 호주

가. 국세통계 공개 규정 및 통계 담당 조직⁶¹⁾

- 호주 국세청(ATO)은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세청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청에서 국세통계를 작성함
 - 행정자료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 「통계법(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ct 1975)」에 따라 국세통계를 작성함
 - ABS의 공정성과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통계를 중앙부처 기관(통계청)에 집중시켜 통계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수집 중복을 피하면서, 공식기관이 수집한 통계 간의 호환성 및 통합을 수립하

59) 일본 통계센터, <https://www.nstac.go.jp/services/archives.html>(검색일자: 2019. 2. 7)

60)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statistics/toukeihou/index.htm>(검색일자: 2019. 2. 7)

61) 통계청, 『2018년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18. 7, pp. 14~33을 참조하여 정리

고 있음⁶²⁾

- 호주는 국가통계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호주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되는 사업체 관련조사는 통계승인실(Statistical Clearing House: SCH)의 승인이 필요함⁶³⁾
 -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통계와 관련하여 SCH와의 접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연락관(Survey Liaison Officer, 1~2명씩)을 임명하고 SCH는 총 40명 정도의 조사연락관을 연 3~4회 소집하여 통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⁶⁴⁾
- 통계청은 국세청과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사업체 모집단을 관리하고 각종 국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함
 - 국세청에 있는 ABS—ATO Information Management Unit이라는 조직에 통계청 직원을 파견하여 통계청 정보수요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국세청의 통계정보 분석, 국세통계의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⁶⁵⁾
 - 국세청은 호주 통계청에 관련 경제조사 등의 준비를 위해 납세자의 급여 및 임금 코드(salary and wage occupation codes)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⁶⁶⁾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

- 호주 국세청은 국세통계(taxation statistics) 발간물을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 2015/16 과세연도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음
 - 통계요약표와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통계청사이트와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음

62) ABSA 1975, §6.

63) 통계청, 『2018년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18. 7, p. 15.

64) 통계청, 『2018년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18. 7, p. 16.

65) 통계청, 『2018년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18. 7, p. 24.

66)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forms/salary-and-wage-occupation-codes-2017/> (검색일자: 2019. 2. 8)

- 호주의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스냅샷형식으로 간략하게 도표와 설명을 추가하여 가독성이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⁶⁷⁾
 - 개인, 기업,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으로 구분하여 세금신고서 제출비율, 법인 유형별, 산업별 순납부세액 등을 2015/16 국세통계의 경우 2011/12년도부터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음
 - 주요 통계목록은 개인, 기업, 파트너십, 트러스트,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Good and Sales Tax), 복리후생비세(Fringe Benefits Tax), 소비세, 원천징수세, 국민연금(Super funds), 납세순응비용, 자선단체, 업종벤치마크 통계 등 모두 14개 항목으로 통계를 제공함

- 개인소득세 관련 통계는 성별, 소득수준별, 소득공제, 납부세액 등을 도표 28개로 보여주고 있음
 - 평균과세소득 상위 10개 직종 및 지역 순위를 지도와 표로 제공하고 있고, 각 소득별 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평균값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개인납세자의 소득신고서 샘플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파일은 통계청을 통해 승인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음
 - 개별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별식별정보는 제거하고 2003/04 ~ 2010/11 년도의 개인소득세 신고 샘플파일 이용이 가능함

- 법인세의 경우 주요 항목을 요약하여 도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과세대상 소득범위, 회사 유형별, 규모별 수익금액 및 비용 및 손실 등에 대해 1979/80년에서 2015/16년간의 항목을 엑셀파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자, 배당, 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 당기손익, 세액공제, 법인세액 등을 소득 범위와 회사 유형별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시함
 - 통계에 사용되는 업종분류(business industry code)는 「호주표준산업분류

6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5-16/?anchor=Statistics#Statistics>(검색일자: 2019. 2. 11)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하지만 세금신고 목적으로 보다 간소화되었음⁶⁸⁾

- 업종벤치마크 통계는 사업활동보고서와 세금신고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재무 비율을 제공하여, 일반적인 동종 업계의 매출비율에 따른 세금관리 및 경영활동(매출액, 매출비용 등)의 관리를 점검할 수 있음⁶⁹⁾
 - 숙박시설 및 음식업, 건축업, 교육훈련 등 서비스업, 건강관리 및 개인서비스업, 인쇄업, 기타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운송업 및 창고보관 등, 소매업으로 구분함
 - 14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세금신고서 등을 통해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업종벤치마크 통계는 업종별 매출액 범위(annual turnover range)를 설정하고 매출원가/매출액, 총비용/매출액, 평균판매비용, 평균판매총비용 비율기준을 업종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스스로 경영활동을 평가하거나 세무신고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벤치마크 범위 미만인 경우 매출대비 비용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벤치마크 범위 이상인 경우는 매출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사업소득과 비용에 대한 기록의 실수가 있는 경우 등을 기재하여 업체가 점검할 수 있음

- 기타 세목(개별소비세)의 경우 각 세목의 세수입을 도표로 작성하여 요약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순응비용의 경우 소득세 신고 완료 평균시간과 개인의 조세부담비용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음

6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calculators-and-tools/business-industry-code-tool/> (검색일자: 2019. 2. 8)

69) 납세의무자의 가장 높은 총소득 기준으로 업종별 계산($\text{Cost of sales} \div \text{turnover} \times 100$)을 하고, 업종별 매출액과 매출원가/매출액, 평균판매원가, 총경비/매출액 평균총경비 등의 통계비율을 제공함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

- 국가 통계기관인 ABS는 현재 2,000만개가 넘는 개인기록인 가계인구조사 데이터 파일 등 대용량 파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 주 및 지역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ABS는 통계 및 연구목적으로 식별가능한 조세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며 데이터는 일부만 공개될 수 있음

- ABS의 사업 종단면 분석데이터 환경(Business Longitudinal Analysis Data Environment: BLADE)은 사업자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를 식별자로 하여 사업 데이터를 정부 프로그램 사용 데이터와 결합하고 있음⁷⁰⁾
 - 2000/01년 이후의 기업의 매출액, 수출 및 혁신 상태, 고용 및 노동생산성을 포함한 자료로 기업의 성과 및 종사자, 기업 특성 등이 분석 가능함
 - BLADE는 기존의 공개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ABS 조사자료인 비즈니스특성조사(BCS), 경제활동조사(EAS) 등과 국세청의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법인세신고서 등을 통계 및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승인된 연구원 및 분석가는 BLADE를 사용하여 기업의 운영방식, 성과, 혁신, 고용창출,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요소 등을 연구할 수 있음
 - BLADE는 호주 정부의 데이터 통합 파트너십(DIPA)의 핵심 요소로 2001/02에서 2015/16 과세연도의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함
 - BLADE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ABS가 관리하는 공식적인 평가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70) 호주 정부, <https://www.industry.gov.au/data-and-publications/business-longitudinal-analysis-data-environment-blade>(검색일자: 2019. 2. 15)

- BLADE의 연구사례에는 ① 수출활동 및 비즈니스 성과 ② 호주의 기업가정신 ③ 남호주 혁신 및 투자금의 영향 등이 있음

- 호주는 다중기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Multi-Agency Data Integration Project: MADIP)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분석, 연구 및 통계 목적에 활용하고 있음⁷¹⁾
 - 다중 기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는 6개의 연방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호주의 통계청, 국세청, 보건부, 교육인력부, 사회복지부, 국민서비스부가 참여함
 - 다중 기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보험, 정부 보조금, 개인소득세 및 2011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연계하였으며, 연결된 데이터는 사회 경제적 결과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정보를 제공함
 - ABS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함
 - 연계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를 제3기관에 의뢰하여 PIA(Privacy Impact Assessment)기준에 따라 업무처리의 투명성 등을 평가함
 - PIA(Privacy Impact Assessment)기준: 투명성, 안전성, 사생활보호 등
 - 연구자료에는 ① 개인소득세 및 센서스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Personal Income Tax and Census Data Integration Project, 2015년) ② 개인소득세 및 이민자 통합 데이터 세트(Personal Income Tax and Migrants Integrated Dataset, 2012년) 등이 있음⁷²⁾

71)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websitedbs/D3310114.nsf/home/Statistical+Data+Integration+-+MADIP>(검색일자: 2019. 2. 13)

72)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websitedbs/D3310114.nsf/home/Statistical+Data+Integration+-+Projects>(검색일자: 2019. 2. 13)

5. 남아공

가. 국세통계 담당 조직⁷³⁾

- 남아공은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이하 ‘SARS’)에서 조세징수를 전담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있음
 - SARS는 관련 법령(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 1997)에 근거하여 1997년에 출범하였음
 - SARS는 정부기관에 해당하지만 일종의 독립적 행정조직으로서 조세 및 관세 징수를 전담함

- SARS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례 국세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1991년 이전에는 기본적인 조세 통계 데이터에 대하여 출판물 형식으로 각급 정부기관 및 대학, 금융 기관 등의 수요자들에게 배포하였음
 - 이후 SARS의 주도로 조세행정 현대화가 추진되면서 납세자 및 과세거래 등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 2008년부터 SARS는 새로운 형식으로 연례 조세통계자료를 다시 공표하기 시작하였음
 - 연간 국세통계 데이터는 SARS와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가 공동으로 발표함

- SARS는 학계, 언론, 전문가 등 광범위한 국세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73) 남아공 국세청, <http://www.sars.gov.za/About/SATaxSystem/Pages/Tax-Statistics.aspx>(검색일자: 2019. 2. 11)

Breytenbach, Deon and Leolo, Mamiky “Tax Statistics in South Africa”, Int. Statistical Inst.: Proc. 58th World Statistical Congress, 2011.

-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국가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통계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국가발전계획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진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실증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경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포괄적인 조세 통계 생산을 해야 함
- 조세 관련 국가지식체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경제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국세 및 관세 행정의 개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나. 국세통계 공개 현황⁷⁴⁾

- 전반적인 세수 현황 및 주요 세목별 통계 내역을 망라하는 세부 자료를 최근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제시함
 - 국세 수입 및 세무신고 관련 주요 정보를 최근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시함
 - 최근 4개년의 데이터를 이동식(rolling basis)으로 매년 갱신하여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세목들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생성하면서 각 세목별로 세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종합 세수 현황,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관세 등의 항목별 세부 내역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에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정책 변화의 영향과 같이 복합적 분석 결과도 포함하는 시도를 확대함
 - 모든 국세통계 내역은 세무신고 및 과세 내역을 근거로 작성되며, 통계 작성시 근거 데이터의 적정성에 평가를 거쳐 이상치(outliers)는 배제하는 조정을 수행함

74) 남아공 국세청, <http://www.sars.gov.za/Media/MediaReleases/Pages/20-December-2018---Tax-Statistics-2018.aspx>(검색일자: 2019. 2. 12); Duncan Pieterse et al., "Introduction to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nd National Treasury Firm-Level Panel,"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January 2018.

- 세목별 세부 자료에 앞서 전체 세수 현황 및 최근 추이를 제시함
 - 납아공의 조세체계, 세무 등록, 조세정책, 예산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 조세 수입 규모 및 주요 경제지표 대비 비율 등의 분석 내용을 제시함

- 개인소득세 통계는 단순한 원자료 수치보다는 세부 집단별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음
 -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룹화하고 각 계층의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함
 - 납세자 소득 그룹, 지역, 성별, 나이 등 세부 요소별로 소득 및 세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법인세 통계는 복잡한 세부 원시자료 제시보다는 주요 관심 항목들을 간략한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법인세 잠정납부 실적, 법인세 과세 내역 등의 기본 통계자료를 그래프와 표를 활용하여 설명함
 - 산업별 분석, 손실법인 및 중소기업 관련 통계 등 세부 부문별 분석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시함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제의 경우 핵심 자료들을 위주로 관련 세목별 통계 분석 내용을 제시함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 종류별 세수실적, 매출 및 매입부가세 현황 등을 제시함
 - 관세, 수입부가세, 양도소득세, 물품소비세 등에 대한 세목별 분석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함

다. 국세통계 활용 현황⁷⁵⁾

- SARS는 남아공 통계청(Statistics South Africa, 이하 'Stats SA')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세통계를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Stats SA는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정책 개발에 필요한 공식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남아공 법령상 Stats SA의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통계당국의 자료 조사권한이 강력한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징수 과정에서 축적된 대규모 납세자 데이터를 병용함으로써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SARS의 국세 데이터의 중요성 또한 부각됨

- SARS와 Stats SA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자료를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세부 실증데이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 관련 세법에 따라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세무확인증(tax certificates) 정보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세무확인증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인구학적 구성 및 고용주, 고용기간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남아공이 당면한 경제활동 참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에 중요한 기여를 함
 - 납세자의 지리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의 지역적 분포 및 자원 재분배 관련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세무확인증 등에 포함된 피고용인의 거주지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데이터만으로

75) 남아공 국세청 발표 자료, <https://www.slideshare.net/ICTDTax/the-journey-of-tax-statistics-in-south-africa>(검색일자: 2019. 2. 12); Elizabeth Gavin et al., *The roles of tax administration data in the production of official statistics in South Africa*, Proceedings 59th ISI World Statistics Congress, 25-30 August 2013.

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세부 지역별 경제활동 내역을 조사할 수 있음

- 남아공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계로 세부 지역 단위에서 경제활동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정책 개발에 중요함

- SARS 및 재무부 등 유관 당국은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세 자료의 활용 폭을 넓히고 통계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함
 - 남아공 의회의 재정분과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를 비롯한 의회 관련 기구에 브리핑 및 기타 발표를 수행함
 - 통계자료 공개 시점에 다수의 워크숍을 진행함
 - 국세통계 관련 주요 현안주제 제시, 신규 항목 또는 과거 데이터 해석에 이견이 있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함
 - 통계자료의 주요 이용자와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여 수요자 의견을 반영함
 - 향후 출간할 통계자료 항목 또는 추가 반영이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국세통계를 활용한 연구사례를 소개함
 - 기타 의회의 예산 편성 관련하여 필요 자료 제공 및 SARS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 반영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대학 세계경제 개발연구소(UNU-WIDER)⁷⁶⁾,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무부, 국세청(SARS)이 협업하여 외부연구자가 국세통계 미시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⁷⁷⁾
 - 이는 유엔대학 세계경제 개발연구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남부 아프리카 - 포괄적 경제개발(이하 ‘SA-TIED’⁷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임

76) United Nations University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77) Southern Africa - Towards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http://sa-tied.wider.unu.edu/data> (검색일자: 2019. 2. 12)

78) Southern Africa - Towards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 남아프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연구(SA-TIE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남아프리카 재무부 및 과세당국이 작성한 국세통계 미시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며, 현재 소득세, 법인세, 관세, 부가가치세의 국세통계를 제공함⁷⁹⁾
 - 연구자 편의를 위해 각 세목별 국세통계는 서로 통합이 가능함
 - 데이터는 보안된 시설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와 협업하는 유엔대학 세계경제 개발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연구(SA-TIED)는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초안(proposal)을 제출하고 채택된 연구자는 국세통계 미시자료의 이용이 가능함⁸⁰⁾
 - 2018년도부터 3년간 진행될 연구주제 3개와 세부 연구내용도 발표되었음

〈표 III-13〉 SA-TIED에서 공지한 연구주제

구분	연구내용
주제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위한 기업개발 - 조세정책이 고용, 과세소득, 회사성장, 투자에 미친 영향 - 납세순응 및 조세회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정책 - 과세체계 단순화 및 과세행정 개선 - 가구 및 성별에 기반한 소득분배에 대한 조세혜택 효과 - 투자소득 자본화 기법을 이용한 부의 재분배 추정 -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임금, 업무의 질)
주제 2	포괄적 개발을 위한 세수조달(public revenue mobilization),
주제 3	불평등해소

자료: Southern Africa - Towards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http://sa-tied.wider.unu.edu/article/public-revenue-mobilization-and-inequality>(검색일자: 2019. 2. 12)

79) Southern Africa - Towards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http://sa-tied.wider.unu.edu/data> (검색일자: 2019. 2. 12)

80) 상동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제공 비교

가. 국세통계 규정

- 국세통계 공개 또는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⁸¹⁾
 -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서 국세통계의 공개 및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국세통계를 작성 및 공개해야 함
 - 미국은 「내국세법」 제6108조에서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매년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작성 및 공개해야 함
 - 영국은 「통계법2007」(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제6조에 국가에서 발간하는 모든 통계 품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통계법」 제2조에 국세통계 작성 및 공개 규정만 있으며, 국세통계 제공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호주는 「통계법」 제6조에 따라 국가통계를 통계청에서 모두 작성 및 공개하고 통계청만이 국세통계자료 제공 권한이 있음

81)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과 관련한 별도의 법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관련 내용의 파악이 가능함

〈표 IV-1〉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국세통계 공개·제공 규정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6108조
영국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일본	「통계법」 제2조
호주	「통계법(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ct 1975)」
남아공	별도 규정 발견 못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는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국세통계를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세청이 승인한 경우 외부연구자에게도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국회 세법 제·개정 및 세입예산안 심사와 같은 의정활동,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안 분석 활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목적으로 국세통계 요청 시 제공함
 - 미국은 국세청 내 연구부서가 외부 관계자 요청에 따라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국세통계자료 사본(transcript)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함
 -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국세청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함
 - 영국은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한해 과세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세통계 제공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임
 - 우리나라는 국세통계센터 개소를 통해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Data lab 운영 현황과 비슷함
 - 향후 외부 연구자까지 확대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미국, 영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통계자료 제공으로 볼 수 있음
 - 호주는 공익목적의 연구 및 통계 작성 시 통계청에서 승인된 연구자에게만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연구기관과 연합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국세 통계를 제공함

〈표 IV-2〉 국세통계 제공 대상자

국가	국세통계 제공 대상자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상임위원회: 세법 제·개정 목적, 세입예산안 심사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예산안 분석, 세수추계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행목적
미국	국세청에 국세통계 제공을 요청한 자로 국세청장이 국세통계를 제공하도록 승인한 자
영국	외부 연구자에게 과세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Datalab)를 2011년도에 도입하였으며, Datalab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는 연구기관 소속 등으로 제한
일본	-
호주	통계청이 승인한 자
남아공	학계, 언론, 전문가 등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자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국세통계 조직

- 미국, 영국, 일본은 분산형 통계기구로 국세청이 통계생산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국세통계자료 생성이 가능함
- 반면 호주는 통계를 중앙부처인 통계청에 집중시켜 생산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국세청과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사업체 모집단을 관리하고 각종 국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표 IV-3〉 통계기구의 유형

구분	분산형	집중형
구조	각 행정기관에 통계기능을 분산	통계를 중앙부처 기관(중앙 통계국)에 집중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요구에 정확, 신속하게 대응 가능 • 소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 조사 실시에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쉬움 • 통계의 일관성 있는 체계를 도모하기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상호 비교 가능성이 경시 • 통계 조사의 중복 및 통계 체계상의 결함 발생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움 • 소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통계 조사의 기획·실시에 활용하기 어려움
외국의 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스웨덴

자료: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2-2.htm(검색일자: 2019. 1. 22);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 「統計調査の種類と法令の関係条項」 자료(http://www.gender.go.jp/kaigi/danjo_kaigi/siryu/pdf/ka11-4-1-4.pdf(검색일자: 2019. 1. 2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국세청 조직 내에서도 미국, 영국은 별도의 통계국을 설치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세청 각 세목 담당부서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여 생성함
 - 미국 국세청 ‘연구, 분석, 통계(Research, Analytics and Applied Statistics; RAAS)’ 본부하의 ‘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D)’에서 국세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고, 소속직원은 대부분 경제학자, 통계학자, 정보기술자 등으로 구성됨
 - 영국은 국세청 내에 “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KAI)라는 통계 분석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학자, 데이터과학자,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국세통계 생산은 국세청 본청의 기획과 조세통계팀에서 국세통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계생산 체계라고 볼 수 있음
 - 전국 12개 국세국의 총무부 기획과에서 과세정보를 국세청 조세통계팀에 제공하는 방식임
 - 다만 민간급여 실태조사(근로소득세 통계)는 국세청에서 외부 민간사업자에게 통계생산을 위탁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세통계를 국세청(SARS)의 주도로 생산하고,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와 공동으로 발표함

〈표 IV-4〉 국세통계 생산 조직 비교

국가	국세통계 생산 조직
미국	국세청 '연구, 분석, 통계(Research, Analytics and Applied Statistics; RAAS)' 본부하의 '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I)'에서 국세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
영국	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KAI)에서 통계분석 전담
일본	국세청(기획과 조사통계팀) 및 전국 12개 국세국 등 '민간급여 실태조사'는 외부 민간사업자가 통계생산
호주	통계청
남아공	국세청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국세통계 작성방법 및 공개항목

1) 국세통계 작성방법

- 우리나라, 영국, 호주, 남아공의 경우 국세통계 공개항목은 전체 신고서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반면 미국, 일본의 경우 세부적인 통계항목은 표본을 대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미국, 일본은 총신고 수, 세수액과 같은 총괄 자료는 전체 신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유형 또는 규모별 수입금액, 공제액, 납부세액과 같은 세부적인 통계항목은 표본을 대상으로 작성함
 - 미국은 개인의 경우 소득규모 및 소득금액이 20만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 사업 소득이 5천만달러 이상인지 여부 등 특이사항 여부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모집단에서 동일비율로 표본을 선정함

- 일본은 급여, 기업, 소득세 신고 분야로 나누어 표본을 선정하며, 표본선정기준은 각 분야별로 상이함
 - 급여: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급여소득자를 전수선정하고,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소득이 2천만엔을 초과하는 근로자만 전수선정, 2천만엔 이하 시 근로자 수에 따라 0.25~33%의 비율로 표본을 선정함
 - 기업: 자본금 규모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한 후 모집단별로 표본을 선정하며, 10억엔 초과 시 전수추출하고, 10억엔 이하 시 50~65%의 비율로 표본을 선정함
 - 소득세 신고: 소득유형(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규모별로 모집단 구분한 후 모집단별로 표본을 선정함

〈표 IV-5〉 국제통계 작성방법

국가	국제통계 작성방법	내용	표본 선정기준
우리나라	전수통계	『국제통계연보』상 국제통계는 전체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됨	해당사항 없음
미국	전수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신고 수, 세목별 총세수액(주정부별, 신고서별로 구분) • Data book에 게시 	해당사항 없음
	표본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 산출까지 소득금액, 공제금액, 납부세액 등 상세금액(소득규모별, 신고유형, 적용세율 등으로 구분) • 세목별 통계연보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및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에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총자산, 총소득 규모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하고 각 모집단별로 표본선정 • 개인: 소득규모 및 고소득자 등과 같은 특이사항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하고, 모집단별로 표본을 선정
영국	전수통계	공시하는 세수통계자료는 전체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됨	해당사항 없음
일본	표본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민간급여조사</u> : 총근로소득자 수, 급여총액, 평균급여, 급여분포, 세액 • <u>기업표본조사</u> :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법인 수, 업종별 수입금액 등 • <u>소득세 신고 표본조사</u> : 소득유형별, 소득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민간급여조사</u>: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업장규모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한 후, 급여소득 2천만엔 초과하는 근로자 급여는 전수추출

국가	국세통계 작성방법	내용	표본 선정기준
		모별 납세자 수 및 세수액, 각종 공제금액, 원천징수세액, 「조세특별조치법」 관련 항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표본조사: 자본금규모에 따라 구분하며, 10억엔 초과 시 전수통계(10억엔 이하 시 표본비율 50~65%) 소득세신고 표본조사: 소득 규모별로 표본 선정
호주	전수통계	공시하는 세수통계자료는 전체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됨	해당사항 없음
남아공	전수통계	공시하는 세수통계자료는 전체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됨 (단 근거 데이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이상치를 배제하도록 조정함)	해당사항 없음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국세통계 공개항목

-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가장 많은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통계공개항목 또한 매우 세세하게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총괄, 징수, 세목별 통계(종소세, 원천세,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부가세, 주세, 소비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기타로 구분하여 총 490개 항목의 국세통계를 공개함
 - 이 중 세목별 통계가 323개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자녀장려금의 공개항목이 많음
 - 미국은 개인, 법인, 상속·증여, 비영리단체로 구분하여 국세통계를 공개함
 - 영국은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및 자녀 관련 세제지원, 조세격차, 성별격차로 구분하여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일본은 급여소득, 법인세, 개인소득세 유형(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별 소득세 신고에 대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호주는 개인, 기업, 파트너십,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납세순응비용으

로 구분하여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남아공은 원자료 수치를 보여주기보다는 원자료를 분석하여 집단별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하거나 시각화하여 보여줌
- 우리나라는 2018년에 소득금액 분위별 세부담 비중, 고액 양도자산의 양도세, 공익법인의 수익금액 세분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통계 등을 신규로 공개함으로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분위별 소득금액 및 세부담 비중을 10% 단위로 구분하여 공개함
 - 공익법인의 총수입금액만 제시하던 것에서 수익금액을 세분화하였고, 공익법인 수를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공개함
- 우리나라와 영국은 조기 생산이 가능한 국세통계는 조기공개 또는 월별공개를 하고 있어 주요국과 비교 시 적시성 있게 국세통계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매년 2차에 걸쳐 통계항목의 조기공개를 하며, 월별공개를 통해서는 매월 말 2개월 전 기준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함
 - 1차 조기공개는 7월에 하며 총세수 및 세목별 신고 현황을 공개하고, 2차 조기공개는 11월에 하며 국제조세, 전자세원, 세무조사불복 등의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 영국은 매월 세목별 세수액 및 영국 내 자산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통계를, 반기별로는 납세자 수 및 사업자등록현황,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예측액, 법인세 세수 및 조세채무, 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음
- 세목별 상세 통계자료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은 통계데이터 발간까지의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 영국, 남아공은 과세신고연도부터 통계데이터 발간까지 약 1년의 시차가 존재함

- 시차가 차이나는 것은 통계생산방식 및 제공형태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경우 조기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관련 발간물을 공개하고 있어 국제통계 공개의 적시성보다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통계를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국제통계를 적시성 있게 공개하는 영국, 남아공에 비해서도 국제통계의 공개범위가 넓고 세분화된 국제통계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남아공은 간단한 통계자료와 이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통계연보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시각화하여 발표하고 있음

- 주요국과 비교 시 미국, 영국, 일본, 호주는 우리나라에서 공개하지 않는 국제통계 항목이 있으며, 주로 차이가 나는 항목은 세부담에 따른 소득신고자료 통계와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임
 - 미국은 소득규모를 17~24단계로 우리나라보다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적용세율 및 실효세율에 따른 세부담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실효세율은 5% 이하, 5~7%, 7~10%, 10~12%, 12~15%, 15~17%, 17~25%, 25~30%, 30~50%, 50~100%, 100% 이상의 11단계로 구분함
 - 영국은 고세율 적용대상자 비중, 조사대상 가구의 실효세율, 개인의 재산(wealth) 구성내용의 분석내용을 공개하고 있음
 - 일본은 급여소득 통계작성 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원으로 구분하여 근로자 수, 소득금액, 평균급여를 공개함
 - 호주 또한 과세소득 상위 10개 직종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법인세 항목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피지배외국법인 및 국가별 보고서 관

런 세수통계를, 영국의 경우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상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피지배외국법인과 국가별보고서 관련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규모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영국은 업종 및 업력별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표 IV-6〉 주요국의 국제통계 공개항목 특징

국가	국제통계 공개 특징	국제통계 공개방법 및 주기	우리나라 공개항목과의 차이점
우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징수, 세목별 통계(종소세, 원천세,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부가세, 주세, 소비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기타로 구분하여 통계 공개 • 총 490개 항목의 국제통계항목을 공개하며, 이 중 세목별 통계가 323개를 차지함 •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가장 많은 통계항목 공개 • 2018년에 새롭게 공개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금액 분류별 소득액 및 세부담 비중 - 고액 양도자산, 공익법인 통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공개 매년 12월, 시차¹⁾ 1년; 세목별 상세 현황 『국제통계연보』 책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 • 조기공개(매년 7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총세수 현황, 세목별 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 2차: 국제조세, 전자세원, 세무조사불복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 • 월별공개(매월 말): 사업자등록 현황 통계를 국제통계 홈페이지에 공개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법인, 상속·증여, 비영리단체로 구분하여 국제통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S Data book(매년 3월, 시차 1년): 세입 현황, 세무조사 실적, 신고유형 등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발간 • Complete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매년 8~10월, 시차 2년) - Corporation Complete Report(매년 4월, 시차 3년) • SOI Bulletin(소득통계국 공지, 분기별 발표): 조기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와 홈페이지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에 따라 신고자료를 구분함: 세율은 누진세율체계에 따른 한계세율, 실효세율은 11단계로 구분 •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배외국법인(CFC) 세수통계 - 국가별 보고서 통계 공개

국가	국제통계 공개 특징	국제통계 공개방법 및 주기	우리나라 공개항목과의 차이점
영국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및 자녀 관련 세제지원, 조세격차, 성별격차로 구분하여 국제통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별로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홈페이지에 공개 • 연간공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세액공제 및 감면, 조세격차 등 각종 통계 • 반기공개: 납세자·사업자 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 예측액, 법인세 세수 및 조세채무, 기업 투자관련 세제지원 현황 • 분기공개: 부가가치세, 담배·주류 등의 물품세 등 • 월별공개: 총세수입 현황, 영국 내 재산거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고세율 적용대상자 비중, 조사대상 가구의 실효세율, 개인의 재산(wealth) 구성내역 및 분배정도의 분석내용 • 법인세: 연구개발비 관련 상세통계 공개(업종 및 업력 등) • 기타: 세목별 조세격차, 성별 소득 격차 비교서 발간
일본	급여소득, 법인세, 개인소득세 유형(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별 소득세 신고에 대한 국제통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급여, 기업 표본조사,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내용을 통계연보로 발간 및 홈페이지에 공개(매년, 시차 약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소득 통계작성 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구분하여 공개 • 근로자를 직급에 따라 구분하여 근로자 수, 소득금액, 평균급여를 공개
호주	개인, 기업, 파트너십,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납세순응비용으로 구분하여 국제통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항목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매년 4월경, 시차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과세소득 상위 10개 직종 및 지역 순위를 지도와 표로 공개
남아공	원자료 수치를 보여주기보다는 원자료를 분석하여 집단별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하거나 시각화하여 보여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항목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항목 없음

주: 1) 과세연도부터 통계연도 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라. 국세통계 연구 활용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부 정책보고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보고서에 국세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세통계센터의 미시자료 이용이 가능해져 연구목적의 국세통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연구보고서로는 우리나라 법인세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등으로 과세소득 및 결정세액 등의 국세통계가 이용되고 있음
- 미국은 국세청 내 소득통계국 소속 직원들은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단독 또는 외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국세통계를 활용한 보고서에는 납세순응비용효과분석, 납세자권리분석,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근로소득세 예측모델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음
- 영국 국세청의 Datalab을 사용하는 연구자가 수행한 보고서에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기업활동의 부가가치세 경제효과 분석, 개인소득세 조사분석 등이 있음
- 호주는 국세청과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통합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소득세 및 센서스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2015년), 개인소득세 및 이민자 통합 데이터 세트(2012년)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조세 관련 연구주제를 공시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국세통계 미시자료를 제공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재무부 소속 직원들도 국세통계 미시자료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우리나라 국세통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국세통계 생산 조직 및 과정

- 통계 전담조직 확충 및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등 꾸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통계전담부서의 인력(14명)은 미국(350여 명) 및 영국(400여 명)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부족한 전문인력 상황으로 인해 자료의 단순한 취합에 그칠 우려가 큼
 -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세통계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정해진 자료의 단순한 집계에 치우칠 수 있음
 -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통계학자, 데이터 과학자, 경제학자 등 전문인력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국세통계 생산과 활용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공개 자료는 그 내용과 범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 사용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각 세목별 세부 통계를 포함하여 '18. 12. 31. 현재 490개의 국세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광범위한 통계 정보를 제공함
 - 다만 통계자료의 수요나 중요성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세목별 기본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제 활용도가 낮아질 우려도 있음
 - 비교대상 국가들은 통계의 기계적인 산출보다는 국가 발전 단계나 정책 목표, 통계항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료의 경중에 차이를 두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도 향후 국세통계 이용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계생산 내용을 수정할 필요도 있음

- 주요 국세통계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반적 수준인 통계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국세통계 항목의 경우 그래프나 요약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세율 변천, 소득별 납세자 분포, 지역적 특징 등
 - 미국, 영국, 남아공 등의 통계는 정보의 특징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
 - 주요 사항은 그래프와 개략적 설명을 우선 제시하고 보다 자세한 내역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 모든 세목들을 같은 비중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는 등 선별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요약 및 시각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수요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통계전담 조직의 자체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통계분석 자료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세통계 데이터는 매우 방대한 관계로 통계생산자의 취사선택 및 전문적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원데이터 위주로만 국세통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반적인 사용자는 데이터에 내포된 함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음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중에 공개하는 통계정보 단계에서부터 자체적인 전문인력들을 활용하여 전문적 분석을 거친 자료들을 제공함
 - 영국 영국 국세청(HMRC)의 조세격차(Tax Gap) 보고서, 미국 국세청의 각종 연구자료 등 전문적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한 자료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세청의 1차적인 자료 취합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을 거친 고품질의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세통계 제공의 법적 근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통계생산 전 과정에 걸쳐 준수함으로써 국세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국세통계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계생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준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음
 - 영국의 경우 「내국세법」 및 관련 지침에서 통계정보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 영국은 통계운용지침(Code of Practice)에서 통계의 품질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계규정관리조직에서 국세통계를 비롯한 국가 공식통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함
 - 국세통계 생산 및 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품질기준과 절차규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계정보의 품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나. 국세통계 데이터 활용 측면

- 국세통계 세부 데이터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거나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세청이 승인한 연구과제에 한해 국세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조세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부기관 이외에 민간 연구자들에게도 국세통계 세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에 다양한 연구자들에게까지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음
 - 폭넓은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연구자들에게도 국세통계 세부 데이터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세 분야 연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학계나 기타 업계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료 보안 유지 및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선별적인 제공과 사후 관리에 유의가 필요함
- 국세통계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진행상황과 범위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임
 - 방대한 국세 데이터의 특성상 단기적 연구보다는 다수 연구자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세통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 아이디어를 개발, 확대할 수 있음
 - 국세통계 데이터를 제공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고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은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 결과물들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영국도 국세통계를 제공받아 수행한 연구프로젝트 내역을 게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의 개요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 특징별로 재분류하는 등 후속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개발할 여지가 있음
- 통계데이터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 및 의견 수렴 등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세통계의 효과적 사용 및 통계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국세통계 활용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민감한 국세 데이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요구됨

- 영국의 경우와 같이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민감도를 감안하여 연구자들의 사용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고려
- 국세통계 사용 시 준수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계자료의 잠재적 이용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세통계 제공의 유용성을 높일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다수의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국세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국세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다. 신규 생성 가능한 국세통계 항목

- 국가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적 통계를 개발하여 공개 및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자등록으로 확인되는 업종정보를 통해 「사업자 현황 통계」를 월별 14개 업태별, 100대 생활밀접업종별로 사업자 수와 업종별 증감내역을 단순 공개하고 있음
 - 과세대상 소득 규모별 인원 수,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을 공개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조사대상국 중 호주는 기업이 동종 업계의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비교하여 동종 업계에서 차지하는 재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종벤치마크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 과세당국은 업종벤치마크 자료의 수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세통계의 단순 기초통계자료에서 벗어나 호주의 중소기업 벤치마크 사례처럼 국세청이 통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한 자료를 일반 기업 등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은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과 일반소득세율로 나누고,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실효세율 구간별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을 공개하고 있음
 - 실효세율은 납세자의 과세대상소득 대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비중을 11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신고 수, 조정된 총소득, 총결정세액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득규모별로만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납부세액 등을 이용하여 일반소득세율과 실효세율 등을 추가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일본은 민간급여 실태조사 통계의 조사대상자를 근로소득자인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과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일용근로자 및 파트타임근무자 등의 근로소득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계를 작성함
 - 추가로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소득자와 1년 미만 근로자를 구분하여 통계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로자를 임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해당 근로자 수, 소득금액, 평균급여를 공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정확한 근로소득 면세자 파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비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공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라. 행정기관별 자료 활용 확대

- 국세청 이외 행정기관의 통계자료를 국세통계와 결합하여 조세정책뿐 아니라 다른 사회 경제 정책 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경제발전 등 조세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도 국세통계의 수요가 많고, 그 활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생각됨

- 공익목적의 통계 및 연구활동에 수요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통계청의 통계생산 체계변화를 통해 양질의 통계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국세통계 보고체계는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이며, 납세자의 신고자료와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세목별 과세인원, 표준 결정세액 등을 작성됨
 - 반면 호주의 경우 통계청과 국세청의 MOU를 체결하여 국세청 실무진과 협력해서 통계청에서 국세통계 등 모든 행정자료를 작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세청과 통계청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상설 협의기구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세통계 생산 개선방법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 정책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통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국세통계 분석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자료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호주 정부는 다중기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통계청, 국세청, 보건부, 교육인력부, 사회복지부, 국민서비스부의 중요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분석 및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통계청과 국세청 등 국가 행정기관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신규통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별 행정자료의 공유가 원활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T권고안』, 2018. 1.
- _____,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7. 8. 17.
- _____, 『국세정보 공개 확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국세통계센터」 출범,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 생산 본격 지원-』, 2018. 6. 25.
- _____, 『개정세법해설 2014』, 2014.
- _____, 『개정세법해설 2017』, 2017.
- _____, 『2018 국세통계연보』, 2018.
- _____, 『국세행정개혁 TFT권고안』, 2018.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2007 간추린 개정세법』, 2008. 6.
- 통계청, 『2018년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18. 7, pp. 14~33.

2. 해외문헌

Duncan Pieterse et al., “Introduction to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nd National Treasury Firm-Level Panel,”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January 2018.

영국 국세청(HMRC) Statement of Administrative Sources.

- List et al., *Using IRS Data To Identify Income Shifting to Foreign Affiliates*, IRS, 2017.
- OECD, *Tax Administration 2017: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17. 9.
- _____, *Tax Administration 2017: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17. 9.
- Section 6 of the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 US treasury, The 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Practices Need Improvement, 2018. 5.
- 미국 국세청, *2013 Statistics of Income-Corporation Source Book*, Industry Statistics and Their Limitations, 2013.
- _____,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2013 (Publication 1053), 2016.
- _____,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2016 (Publication 1304), 2017.
- 「미국 내국세법(IRC)」, Bloomberg Law.

3. 사이트

- 국세청 국세통계 사이트, http://stats.nts.go.kr/notice/notice_view.asp?page=1&idx=2146#(검색일자: 2019. 1. 24)
- 국세청, https://www.nts.go.kr/about/about_01_05.asp(검색일자: 2019. 2. 14)
- 남아공 국세청 발표 자료, <https://www.slideshare.net/ICTDTax/the-journey-of-tax-statistics-in-south-africa>(검색일자: 2019. 2. 12)
- 남아공 국세청, <http://www.sars.gov.za/About/SATaxSystem/Pages/Tax-Statistics.aspx>(검색일자: 2019. 2. 11)

- 미국 국세청 실무지침,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검색일자: 2019. 2. 12)
- 미국 국세청 통계사이트, <https://www.irs.gov/statistics/>(검색일자: 2019. 2. 12)
-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검색일자: 2019. 2. 12)
-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organisation-chart>(검색일자: 2019. 2. 5)
-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6209/20190131_Scheduled_calendar.pdf (검색일자: 2019. 2. 3)
- _____,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6210/20190131_영국_국세청\(HMRC\)_Announcements.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6210/20190131_영국_국세청(HMRC)_Announcements.pdf)(검색일자: 2019. 2. 3)
- _____,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about/statistics>(검색일자: 2019. 2. 3)
- _____, <https://www.gov.uk/guidance/hmrc-datalab-datasets-available>(검색일자: 2019. 2. 4)
- 영국 통계당국,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code-of-practice/>(검색일자: 2019. 2. 13)
-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about/introduction/shokai/kiko/kikou.htm> (검색일자: 2019. 1. 21)
-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 「統計調査の種類と法令の関係条項」, (http://www.gender.go.jp/kaigi/danjo_kaigi/siry/pdf/ka11-4-1-4.pdf(검색일자: 2019. 1. 22)
-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statistics/toukeihou/index.htm>(검색일자: 2019. 2. 7)
-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2-2.htm(검색일자: 2019. 1. 22)
- 일본 통계센터, <https://www.nstac.go.jp/services/archives.html>(검색일자: 2019. 2. 7)

세법연구 18-09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비교연구

발 행 2018년 12월 31일
저 자 정다운 · 김민경 · 김준현 · 정경화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주)계문사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72-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